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

- ▶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후 3시~5시
- ▶ 장 소 : 교총회관 외솔홀

목 차

제1발제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3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발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53
 -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김선혜(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97
- 박노경(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03
- 박혜영(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09
- 원혜옥(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7
- 조아미(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123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조윤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교수)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 교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¹⁾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조운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교수)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 교수)

I. 서론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매매에 관해 많은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안마련을 위해 2차년도에 걸쳐 기획되었다.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대책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의 흉악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과 전자발찌의 소급입법이나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주민고지제도 등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감독·치료 등 가해자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1) 이 글은 본원의 2012년 고유과제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의 일부로써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그 동안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피해자 관점의 선행연구가 적지 않게 수행되었는데, 주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다. 성폭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연령인지적인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프라와 성인여성 대상의 인프라를 통합해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역의 구성원들이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 없이 함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나간다는 공동체의식이 있다면 흉악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안전망으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로의 확대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연대의 소규모화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

성폭력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성폭력이 발생한 나이, 성폭력의 기간과 빈도,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그 피해와 후유증이 달리 나타난다(주소희, 2010 : 35).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인피해자와는 달리 아직 성장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신기숙, 2011 : 1256).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피해자들보다 불안장애, 공포, 우울증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Friedrich, 1990; 권희경, 장재홍, 2003 : 36에서 재인용). 성폭력이 다른 폭력에 비해 아동·청소년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아동의 정신성적 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신의진, 2010 : 173). 또한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도 피해경험의 회복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다.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경험을 노출하지 않은 경우, 피해가 노출되고 주위로부터 지지적인 반응이 오는 경우와 부정적인 평가와 해석이 뒤따르는 경우, 그리고 피해에 대한 귀인여부에 따라라도 성폭력 피해의 증상과 그 정도는 달리 나타난다(이신영, 박선영, 2010 : 31).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어린이성폭력과 성인성폭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아동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성인을 압도할만한 신체적인 능력이 없다.
2.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
3. 성폭력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4. 특히 2세에서 7세에 이르는 어린 아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는 다르게 사물을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가해자와 혼자 있는 것이 자신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 따라서 폭행현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5. 아동들은 10세가 되기 전까지는 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도 그 일에 연관되어 있으

므로 자기도 나쁘다고 간주하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받게 되는 경우 그 말을 따르게 된다.

6. 아동의 보호자가 그 일에 대해서 아이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분개하여 이성을 잃거나 지나치게 불안과 걱정이 증가하게 되면 아동의 죄책감을 증가시키거나 심리적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7. 부모나 보호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 아동은 자신의 혼란감을 억제하면서 표면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애쓰기도 한다.

(<http://www.child1375.or.kr>, 2012.06.08.)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피해 이후의 경험에 있어서의 독특성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성폭력 피해의 증상을 피해 직후 나타나는 급성 증상과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증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증상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 급성단계

혼란스러움/기억상실 및 해리

악몽과 수면장애

신경질/짜증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울음이나 안절부절

식욕부진이나 섭식장애

수치심/부끄러움

분노

죄책감/자기혐오/열등감

의욕상실

억압(혼란함과 불안감을 억제)

● 만성단계

자존감 와해, 무력감, 만성적 우울증

퇴행행동이나 관심끄는 행동

불면증

두통, 복통

부적절한 성행위나 자위행위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한 행동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또는 유혹하는 태도

집중력 저하, 학업성적 저하

등교거부

또래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증상들은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학령전)인지 학령기 아동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학령전 아동

손가락 빨기, 대소변 실수, 지나치게 부모에게 매달리는 퇴행행동

악몽

분리불안

성에 대한 관심 증가

자위행위의 증가

● 학령기 아동

우울

공격성과 권위에 반항하는 행동

반사회적 행동

부정적인 신체상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주의집중력 약화 및 학업부진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http://www.child1375.or.kr>, 2012.06.08.)

종합해 보자면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 주변사람들의 태도의 파악에서부터 성폭력 이후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후유증과 학업생활, 친구관계 등의 사회적 활동 영역에서의 변화까지를 단기적 증상과 장기적 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성폭력 피해당시의 연령에 따른 증상의 차이와 욕구의 차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 피해자의 심리 진행 단계

주소희(2010)는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진행단계를 여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충격 및 혼란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과 함께 아무일도 아닌 듯 간주하려는 마음과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좌절감사이에서의 혼란함,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둘째는 부정의 단계라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우울 및 죄책감의 단계로 수치심과 자기비난과 절망감이 혼재하는 시기이다.

넷째, 공포와 불안감의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보여줄 반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을 약점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사법기관이나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주위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전체사회에 대한 분노와 전체남성에 대한 분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재수용의 단계로 성폭력이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삶이 그 사건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과 기대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진행단계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경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2) 심리적 증상들

박태영, 박소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피해아동들이 정서장애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면 비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Mash and Wolfe, 1999; 박태영, 박소영, 2007 : 346에서 재인용).

또한 일회적인 성폭력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상처가 더 깊고 친족으로부터의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보다 상처가 더 깊다고 한다.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반응이 피해자의 피해극복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특성이다. 가족들이 성폭력을 수치로 느끼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성폭력 피해아동의 상처는 더 크다고도 한다(박태영, 박소영, 2007 : 346).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가장 최근연구의 하나인 신기숙(2011)의 연구에서는 강간이나 유사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12세에서 15세(아동후기단계) 사이의 피해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피해양상을 피해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피해아동은 아직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의 경험은 그들의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로 인한 장기적 영향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증상과 행동들을 분석해내고 있다.

신기숙(2011 : 1278)은 성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에 대한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보면 가해자의 성행동이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과 불안, 공포, 슬픔, 두려움 등의 정서반응이 나타나지만 상황에 압도되어 강한 저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사건 후에는 슬프고 두렵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수면장애나 악몽, 섭식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사건에 대한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떠오르게 된다.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사건에 대한 소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건이 알려졌을 경우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왕따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아동들은 소문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니던 학교를 전학하거나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은 성에 대한 관점도 변화시켜 부정적 남성관과 성적 혐오감, 증가된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컸다는 내적 귀인을 가지는 경우가 15사례 중 14사례나 되었으며 자기이미지도 내 몸이 더럽혀졌다거나 가치가 없어지고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후기 성폭력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과 생각변화 등을 분석한 후 이러한 결과를 10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한 것을 보면 심리적 피해의 양상은 유사한 특성을 보였지만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아동후기 연령의 피해아동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서 피해아동들의 남자에 대한 혐오감, 학업중단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성을 가졌다거나 성관계를 원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성적인 피해 및 후유증

성폭력피해로 인해 ‘성행동은 무섭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거나 성기능장애, 성적 활동의 감소, 성만족도 저하, 성에 대한 피해망상적 사고 등 성기능 및 성활동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 성인피해자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증상(권희경, 장재홍, 2003 : 36)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성활동이 활발해 지거나 성적인 표현에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Glasser와 Frosch(1988)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놀이나 말에서 잦은 성적인 몰두나 표현을 하며 잦은 성애적 관계를 맺고 잦은 자위행동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 성적인 요구에 대해 무력감을 경험하였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성간의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받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권희경, 장재홍, 2003; 주소희, 2010 : 42에서 재인용). 가해자의 눈을 통하여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규정하게 되며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성행위를 애정과 친밀함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다(권희경, 장재홍, 2003 : 37).

권희경과 장재홍(2003)은 성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성적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부적절한 성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소년의 부적절한 성행동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자포자기에 의해 성매매나 원조교제에 쉽게 빠지고 자기의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자신을 손상된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어 성적으로 무가치하고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손상된 상품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가 모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의 성적 요구에 대해 적절히 거절하지 못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으로 성관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권희경, 장재홍, 2003 : 37)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성적인 학대와 성폭력에 재차 희생될 우려가 크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방안을 마련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 본 아동 · 청소년 성폭력피해자의 여러 가지 증상과 후유증은 그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폭력을 누구로부터 당했느냐, 피해경험을 비밀로 했느냐, 그리고 성폭력피해경험을 노출한 후 주변의 반응이 어떠한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귀인이 어떤가 등이 피해아동 · 청소년의 그 이후의 생활과 행동 그리고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 · 청소년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내적귀인의 비율이 높다고 할 때 자기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손상된 상품 증후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 사건을 주위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주위사람에게 알려진 경우 그들의 반응에 따라 심리적 증상의 심각성이 달라진다. 아동 · 청소년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업중단의 비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또 이들의 피해경험과 그 부작용이 지속되는 기간은 성인보다 훨씬 더 길다. 달리 말하면 피해의 누적적 결과는 이들의 재피해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자포자기에 의한 범죄세계로의 진입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이 반영된 체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1)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Sociological Crime Prevention Framework)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이론과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 및 변화가 범죄예방 전략의 핵심이라는 가정 하에, Finkelhor(1990)가 1990년에 제시한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sociological crime prevention

framework)과 공중보건 모델에 속하는 3단계 범죄예방 접근법(crime prevention approach)을 살펴본다.

먼저, Finkelhor(1990)가 제시한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은 다양한 범죄유형 중 특히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 CSA)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해 크게 네 가지 활동 영역을 강조하며, 각각의 활동들이 아동 성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본 틀이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강조하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Bolen, 2003 : 181).

네 가지 활동을 정리하면 첫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를 ‘고위험군’을 선별해 내는 것(targeting high-risk population), 둘째,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그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것(deterrence), 셋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sexual socializ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성 역할을 변화시키는 사회정화 노력(altering the male sex role)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전제로 하므로 Finkelhor(1990)의 CSA 예방 틀은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회복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 파악과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전제로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이 두 가지 활동이 공식적인 형사사법 시스템과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특정 범죄자군을 아동대상 성범죄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판별방식이 필요하고, 동시에 형사사법기관과 민간의 공식·비공식적 사후 범죄 대응전략도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나 처우 방법도 자연히 범죄자의 문제행동 수정 및 재범억제 차원에서 더욱 개별화·과학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에 속하는 성 역할 사회화 교육과 남성의 역할변화는 앞의 두 활동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이 두 활동은 종국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 일반시민의 전통적인 의식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Finkelhor(1990)는 모든 아동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에게 자신이 겪은 성적 피해경험에 대해 항상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적절히 아동 스스로 자신의 성적 욕구나 감정, 상황 등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눈높이 방식의 새로운 아동 대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가정 및 학교 내에서의 부모,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범죄 인식 및 성적 감정 표현능력 증대 쪽으로 확대되어야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네 번째 활동에서 속하는 전통적인 남성 역할 변화(altering the male sex role)는 특히 사회

전반에 흐르는 왜곡된 “남성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및 회복이 전제되어야 불합리한 남성중심주의가 없어지고,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반 성인들의 올바른 성 역할 인식이 없다면, 사회 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활동 역시 지역공동체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가부장적인 남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가해자 개인의 낮은 자존감과 폭력성이 성적 학대와 통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Marshall & Barbaree, 1990 : 260). 남성성이나 남성우월주의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회의 성적 폭력 발생 정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Herman, 1990 : 178; Bolen, 2003 : 181).

이런 맥락에서 Finkelhor(1990)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남성 우월성에 대한 불합리한 신념이 가장 먼저 사회에서 해소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요약해 보면, Finkelhor(1990)의 사회학적 차원의 아동 성범죄 예방틀(sociological framework for considering prevention efforts in CSA)은 아동 성범죄 고위험 집단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 신속성, 엄격성, 확실성을 기반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 그리고 아동에 대한 올바른 성 교육 실시와 성인들의 왜곡된 성역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활동 저변에는 결국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이념이 흐르고 있다(Bolen, 2003 : 180).

2)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

(1) 1차 예방활동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접근법(approach)으로 3단계 공중보건(public health)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Daro, 1994 : 20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공중보건 모델은 원래 지역사회 질병예방 전략에 사용되었던 예방모델을 범죄문제에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간략히 3단계 공중보건 모델 내용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공중보건 모델에서는 질병이 사회 구성원들 전체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시민들을 상대로 외출 후 “손 씻기 운동”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에 속한다(NCCD: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2007 : 32). 즉, 1차 예방은 궁극적으로 보면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심각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거시적인 형태의 예방활동을 의미한다.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인 수준의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이나, 아동, 면역체계가 약한 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이미 질병이 확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병을 치료하고 그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병에 걸렸던 환자가 상태가 자칫 더 나빠진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조기에 발견한 병을 치료하고, 완쾌 이후에도 다시 환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형적인 3차 예방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1차 예방이란 일반 지역사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문화 일소 캠페인, 아동권리 보호운동, 성역할 의식변화 등의 광범위한 활동 전체를 말한다(Oates, 1996 : 21).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능성이 높은 해체가정이나 빈곤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활동은 2차 예방에 속한다. 만약 국가의 성폭력 예방 서비스가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게 된 정상적인 일반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부모들을 직접 만나 가정방문 형태로 자녀 성교육 및 양육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활동이 대표적인 1차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에 속하고, 가정 중에서도 특히 소외가정,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빈곤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2차 예방활동에 속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1차 예방은 교육장소나 대상, 방법 등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교사가 모든 아이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성폭력 대처요령 및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특정 아동의 피해 위험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1차 예방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공중보건 모델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은 정상적인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일반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전에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경고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사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연에 일반가정, 아동,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그 발생 자체를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1차 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광범위한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1차 예방활동은 학자에 따라 “보편적인(universal)”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awareness)을 불러일으켜 그 예방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Lampert & Walsh, 2010 : 148).

1차 예방을 일반 보건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심각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주사 접종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투입(input)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병이나 커다란 독감, 또는 위험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적은 비용 투입을 통해 사후 병원입원이나 수술 등의 과도한 치료비용이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에게 “외출 후 손 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주변 내부 공간을 자주 환기하여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질병 예방 차원의 1차 예방 사례가 되므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두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보다 지역사회 일선 기관 레벨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1차 예방 전략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교육, 아동에 대한 자기보호 능력 확대, 부모에 대한 아동 성폭력 위험환경 변화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관련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교육적이며 계몽적인 지역사회 내 활동 전반이 1차 예방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교육 및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중심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 교육도 대표적인 1차 예방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처 방법 및 문제 심각성을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한 아동 그림책(Children's picture book) 제공이 아동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예방에 속하고, 그 효과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Macdonald, 2001 : 27).

(2) 2차 예방활동

1차 예방과 달리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정 예방 활동을 말한다. 즉,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는 극빈층 아동·청소년이나, 사회적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 혹은 부모의 자녀 양육 기술이 현저히 부족하여 자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차 예방인 것이다. 일반 아동·청소년보다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서비스 개입활동을 만들어가므로, 1차 예방보다는 보다 단기간에 극명한 효과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차 예방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강하게 의심되는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전략이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과학적·객관적 방식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느냐에 달려있다(Hunt & Walsh, 2011 : 67). 2차 예방은 아동·청소년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부나 한 부모 가족, 10대 전후에 출산을 하게 된 부부, 정신적 불안 및 약물남용 경력 부부, 주거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의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전략에 속하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집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와 근거-중심 정책 평가(Evidence-based policy) 결과가 위험군 선별에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객관적인 위험 평가 사정표를 통해, 고위험 가족을 선별하여 개별화된 지원, 처우 전략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2차 예방의 관건이다(Daro, 1994 : 405).

보건복지 차원에서 2차 예방은 잦은 독감 징후, 유전적 위험 상황, 질병 고위험 생활습관 등을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일반인들보다 국가가 더 집중적인 치료와 사전 점검을 특정 위험 집단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전략도 빈곤 가정이나, 실직 가정, 알코올/약물 남용 가정, 주거부정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전 점검 및 지원, 예방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3) 3차 예방활동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유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지원체계 전반을 3차 예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Lampert & Walsh, 2010 : 149). 앞에서 논의한 1차, 2차 예방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전 예방 전략이라면, 3차 예방은 피해자 개인, 부모, 지역사회, 정부 조직 등을 통한 사후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형벌, 재범억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3차 예방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역할이 강조되고, 일반 지역사회와 국가사법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빈도와 정도, 심각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 지원, 보호 방식도 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후 재범방지를 위한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3차 예방 단계에서 다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피해자, 부모, 학교, 지역사회, 가해자 전체가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재범억제와 접근차단, 그리고 피해자 회복 및 지원, 치료가 가장 중요한 3차 예방 업무에 속한다(Daro, 1994 : 202).

1차 예방 및 2차 예방이 아직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3차 예방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한 가정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동일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가해 부모가 가진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략들 역시 중요한 3차 예방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에 형사사법 기관들과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바로 3차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피해자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반복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 모델 역시 앞에서 살펴본 Finkelhor(1990)의 사회학적 예방 틀과 같이 1차, 2차, 3차 예방 활동을 통해 가정, 학교, 보건당국, 형사사법기관, 일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회복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1. 조사방법

1) 대상과 방법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이다. 성폭력 관련 시설은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이고, 성폭력을 전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성폭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센터를 포함했다. 조사대상 시설의 전국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각 시설별 종사자 수는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숫자는 해바라기아동센터 73명,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68명,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71명, 성폭력상담소 279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9명,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쉼터¹⁾ 12명, 청소년성문화센터 200명, 위센터 500명 등 총 1,382명이다.

표 1 조사대상시설의 전국분포 현황

대상 시설	종사자수 (추산)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바 라기 아 동 센터	73	9	1		1	1	1	-	-	1	1	1	-	1	-	-	1	-
해바 라기 여성· 아동 센터	68	6	1	1	-	-	-	-	1	-	1	-	-	-	1	1	-	-

1)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쉼터의 종사자는 12명에 그치고 있어 조사대상자 표집에서는 별도의 시설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포함하여 표집하였다.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171	16	2	－	1	1	1	1	－	2	1	1	1	1	1	1	1	1
성폭력 상담소	279	165	20	5	2	6	12	5	3	38	6	5	9	13	9	14	15	3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79	19	2	2	1	1	2	－	1	4	1	2	－	2	－	－	－	1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센터	12	2	－	－	－	－	－	－	－	－	－	－	－	－	－	1	1	－
청소년 성문화 센터	200	33	6	3	1	1	2	1	1	2	3	2	1	4	3	1	1	1
위센터	500	135	17	5	5	7	3	4	3	17	7	11	9	10	13	13	9	2
합계	1,382	385	49	16	11	17	21	11	9	64	20	22	20	31	27	31	28	8

* 출처 : 여성가족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추산자료)

본조사는 7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들 중에서 30% 내외의 회수를 목표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추산 모집단 1,382명 중에서 484명의 조사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35%), 회수된 설문지 전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에 대해 SPSS/WIN(ver.12.0)을 사용하여 전사처리 했고,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했다.

2) 내용과 도구

본조사의 내용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목적과 관련된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조사도구에 포함된 사항은 성범죄

발생원인, 성폭력 정책의 우선순위, 성폭력 관련기관 업무의 실효성,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 방안, 가족내 성폭력 대책, 교육기관에서의 성폭력 대책,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 필요성, 남자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 등이다. 조사도구는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조사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소속기관별로는 원스톱지원센터가 8.7%, 해바라기아동센터가 4.3%,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12.2%, 성폭력상담소가 28.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4.5%, 청소년성문화센터가 15.7%, 위센터가 26.4%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기관장이 8.1%, 간부(실장, 팀장 등)이 18.8%, 직원이 73.1%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 67.6%, 대학원졸이 32.4%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0.7%, 여자가 89.3%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평균 35개월이고, 연령은 평균 3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인		인원수(명)	비율(%)
전체		484	100%
소속기관	원스톱지원센터	42	8.7%
	해바라기아동센터	21	4.3%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59	12.2%
	성폭력상담소	136	28.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2	4.5%
	청소년성문화센터	76	15.7%
	위센터	128	26.4%
직위	기관장	39	8.1%
	간부(실장, 팀장 등)	91	18.8%
	직원	354	73.1%
학력	대졸	327	67.6%
	대학원졸	157	32.4%
성별	남자	52	10.7%
	여자	432	89.3%
재직기간평균 (개월)		35	
연령평균 (세)		38	

2. 조사결과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성폭력 예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예방 정책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71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3.02
성폭력 예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3.8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22

또한 피해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피해지원 정책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2.64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2.95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3.02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3.06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3.30

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실효성을 묻은 결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4.1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산부인과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3.99)', '사건조사 및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3.97)',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연계망 구축(3.82)',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3.81)',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3.66)',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3.51)',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3.42)', '가해자인 친족과 분리된 생활환경 제공(3.34)', '피해자 자립·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취학서비스 제공(3.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음	평균	사례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0.8% (4)	3.8% (18)	15.4% (74)	35.6% (171)	44.4% (213)	4.19	480
사건조사 및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1.7% (8)	5.6% (27)	17.7% (85)	44.1% (211)	30.9% (148)	3.97	479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0.6% (3)	9.7% (46)	26.1% (124)	35.7% (170)	27.9% (133)	3.81	476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1.9% (9)	14.3% (68)	32.3% (153)	33.5% (159)	17.9% (85)	3.51	47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연계망 구축	0.6% (3)	8.8% (42)	24.1% (115)	40.9% (195)	25.6% (122)	3.82	477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0.8% (4)	11.7% (56)	30.6% (146)	34% (162)	22.9% (109)	3.66	477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산부인과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0.8% (4)	9.8% (47)	16.7% (80)	35.1% (168)	37.6% (180)	3.99	479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4.4% (21)	20.1% (96)	25.8% (123)	28.5% (136)	21.2% (101)	3.42	477
피해자 자립·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취학서비스 제공	6.9% (33)	28.7% (137)	28.2% (135)	21.5% (103)	14.6% (70)	3.08	478
가해자인 친족과 분리된 생활환경 제공	7.3% (35)	22.5% (108)	23.6% (113)	22.1% (106)	24.4% (117)	3.34	479

3) 13세미만 및 13-19세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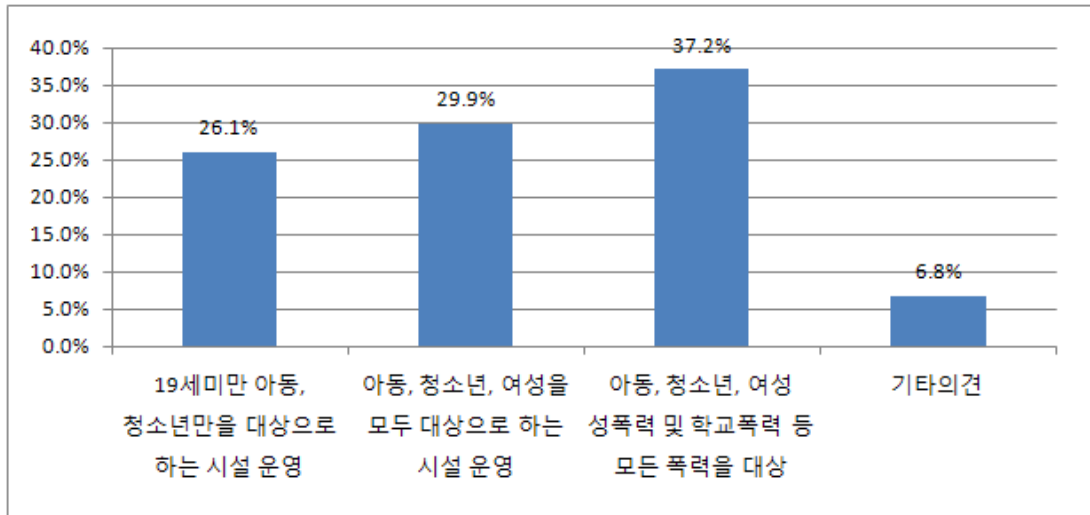
13세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이상 19세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묻은 응답의 평균을 살펴보면 13세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4.53, 13세이상 19세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4.52로 두 응답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13세미만 및 13-19세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의 필요성

개 선 방 안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균	사례 수
13세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0.4% (2)	5.1% (24)	6.9% (33)	15.8% (75)	71.8% (341)	4.53	475
13세이상 19세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0.4% (2)	6.3% (30)	6.1% (29)	15.5% (74)	71.6% (341)	4.52	476

4)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및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시설 운영(3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아동, 청소년,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29.9%)', '19세미만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26.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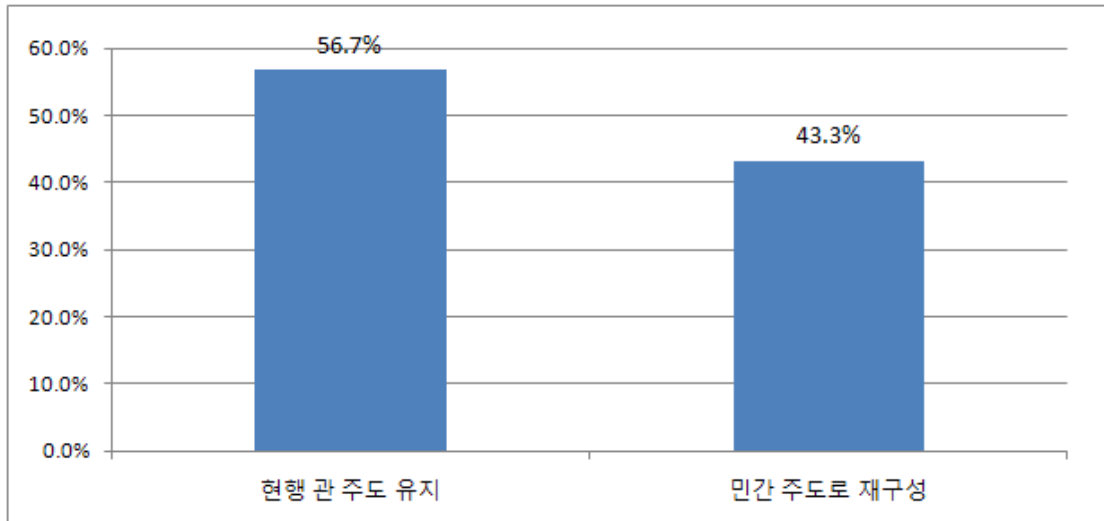
기 타 의 견

- ✓ 13세 미만을 전담(증거확보, 수사, 치료 등)하는 기관이 필요, 현 해바라기는 정신의학 및 심리치료만 시행함
- ✓ 개인적으로는 13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으나, 여건상 힘들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 ✓ 기관을 늘리지 말고 인력 충원이 저예산, 고효율
- ✓ 기존에 있던 시설 실속 운영
- ✓ 매우 필요하다 통합센터(경찰상주)-실질적 원스톱시스템이 바람직, 해바라기센터 역할, 지원미비
- ✓ 성폭력뿐 아니라 치료, 상담 보호시설이 함께 원스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봄
- ✓ 아동 청소년 여성 남성 성폭력 및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시설 운영,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받는다.
- ✓ 해바라기센터나 원스톱센터의 기능을 보강시켜서, 내실있는 피해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격이 비슷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봄

【그림 1】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5)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민간 주도 재구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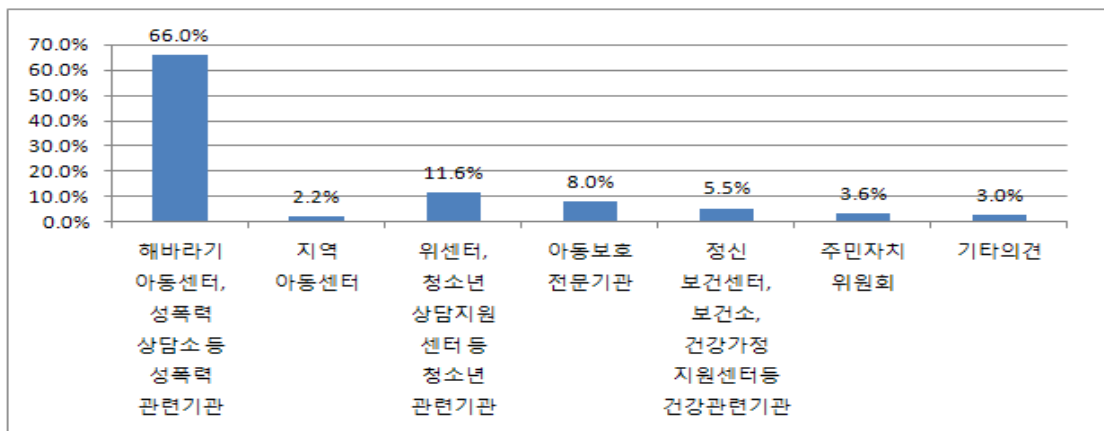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현재는 시청 및 구청 등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주도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현행 관 주도 유지' 응답이 56.7%로 '민간 주도로 재구성(4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민간 주도 재구성에 대한 의견

6)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

민간 주도로 재구성한다면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관련기관(66.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위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11.6%)', '아동보호전문기관(8%)',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건강 관련기관(5.5%)', '주민자치위원회(3.6%)', '지역아동센터(2.2%)' 순으로 나타났다.



기 타 의 견

- ✓ 모든 기관이 허브기관이 되어야 한다.
- ✓ 모든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수사기관
- ✓ 적절하게 모든 기관이 연결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전문기관 재구축
- ✓ 전문기관 재설립
- ✓ 한쪽 주도는 아직 반대 입장
- ✓ 현행만 주도

【그림 3】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

7)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도움정도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한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 구축에 대한 의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도움정도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한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 구축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묻은 결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3.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3.5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3.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전망구축과 공동체의식회복 도움도에 대한 의견

개 선 방 안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평균	사례 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7% (8)	15.9% (75)	32.1% (151)	33.8% (159)	16.6% (78)	3.48	47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3% (6)	13% (61)	34% (159)	36.1% (169)	15.6% (73)	3.52	468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2.1% (10)	8.5% (40)	17.3% (81)	36% (169)	36% (169)	3.95	469

표 8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에 대한 의견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한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2.1% (10)	8.5% (40)	17.3% (81)	36% (169)	36% (169)	3.95	469

8)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실무자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지속적 교류가 4.31로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서비스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 논의구조 조성(4.21)',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조정(4.1)', '지방자치 단체의 여러 직능단체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4.09)',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기회 제공(4.04)', 'CYS-Net이나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관련단체와의 역할 중복문제 해소(3.98)', '학부모 대표 및 피해아동 부모 대표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3.92)', '아동, 여성, 가정, 학교 등 대상을 달리하는 분과회의 개최(3.67)', '구청에 성폭력 전문가 배치하여 시청보다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3.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한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기회 제공	0.9% (4)	4.5% (21)	20.6% (96)	38.3% (179)	35.8% (167)	4.04	467
실무자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지속적 교류	0.2% (1)	2.1% (10)	13.7% (64)	33.8% (158)	50.1% (234)	4.31	467
서비스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 논의구조 조성	0.4% (2)	1.5% (7)	17.6% (82)	37.1% (173)	43.3% (202)	4.21	466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조정	0% (0)	3.4% (16)	23% (107)	33.5% (156)	40.1% (187)	4.10	466
아동, 여성, 가정, 학교 등 대상을 달리하는 분과회의 개최	2.8% (13)	10.8% (50)	28.4% (132)	32.5% (151)	25.6% (119)	3.67	465

구청에 성폭력 전문가 배치하여 시청보다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	4.7% (22)	12.5% (58)	25.4% (118)	35.7% (166)	21.7% (101)	3.57	465
학부모 대표 및 피해아동 부모 대표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	1.7% (8)	7.1% (33)	20.5% (95)	38.7% (179)	32% (148)	3.92	463
CYS-Net이나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관련단체와의 역할 중복문제 해소	0.2% (1)	3.7% (17)	25.3% (117)	39.8% (184)	31% (143)	3.98	462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직능단체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0.2% (1)	4.1% (19)	20.6% (96)	37% (172)	38.1% (177)	4.09	465

9)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응답에서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및 시설 확충(4.5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 증대(4.52)',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법적 권한 강화 및 친권박탈과 위탁가정 제도 활성화(4.45)',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의 경제적 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합적 원스톱 체제로 구축(4.3)', '가족치료사의 가족상담 및 현 직원에 대한 가족개입 훈련(4.27)', '비가해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지원(4.22)', '피해아동의 탄원서가 법적효력이 없도록 개선(3.4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한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및 시설 확충	0.2% (1)	1.3% (6)	5.9% (28)	24.5% (116)	68.1% (322)	4.59	473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법적 권한 강화 및 친권박탈과 위탁가정 제도 활성화	0.2% (1)	2.3% (11)	10.1% (48)	27.4% (130)	60% (285)	4.45	475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 증대	0.4% (2)	2.3% (11)	5.5% (26)	27.9% (132)	63.8% (302)	4.52	473

비가해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지원	0.2% (1)	3.2% (15)	15.9% (75)	36.1% (170)	44.6% (210)	4.22	471
피해아동의 탄원서가 법적효력이 없도록 개선	12% (55)	7.4% (34)	28.1% (129)	25.3% (116)	27.2% (125)	3.48	459
가족치료사의 가족상담 및 현 직원에 대한 가족개입 훈련	0.6% (3)	3.8% (18)	13.6% (64)	31.5% (148)	50.4% (237)	4.27	470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의 경제적 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합적 원스톱 체제로 구축	1.1% (5)	2.5% (12)	12.7% (60)	32.5% (154)	51.3% (243)	4.30	474

10)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대책의 개선사항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피해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피해 예방'이 4.81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은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4.72)', '피해 아동, 청소년 및 부모 심리치료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4.68)',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교육기관을 떠나는 일 방지 및 피해아동, 청소년 중심의 사건 처리(4.64)',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4.64)', '신고의무자는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철저 이행 및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숙지(4.59)', '아동, 청소년의 피해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지양 및 정확한 정보 전달(4.48)', '가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처벌 실시(4.47)', '사건발생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처벌(3.81)', '위센터와 교육청의 개입(3.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대책의 개선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한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신고의무자는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철저 이행 및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숙지	0.2% (1)	0.6% (3)	6.1% (29)	25.5% (121)	67.5% (320)	4.59	474
아동, 청소년의 피해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지양 및 정확한 정보 전달	0.8% (4)	0.4% (2)	8.9% (42)	29.4% (139)	60.4% (285)	4.48	472
피해 아동, 청소년 및 부모 심리치료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0% (0)	0.6% (3)	3.6% (17)	22.6% (107)	73.2% (347)	4.68	474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교육기관을 떠나는 일 방지 및 피해아동, 청소년 중심의 사건 처리	0.6% (3)	1.5% (7)	5.3% (25)	18.4% (87)	74.2% (350)	4.64	472
피해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피해 예방	0% (0)	0.4% (2)	1.7% (8)	13.9% (66)	84% (398)	4.81	474
위센터와 교육청의 개입	3.4% (16)	8.7% (41)	25.7% (121)	36.7% (173)	25.5% (120)	3.72	471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0.2% (1)	0.2% (1)	4.2% (20)	18.1% (86)	77.2% (366)	4.72	474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0.4% (2)	0% (0)	5.9% (28)	22.1% (105)	71.6% (340)	4.64	475
가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처벌 실시	0.2% (1)	2.5% (12)	8.2% (39)	27.6% (131)	61.4% (291)	4.47	474
사건발생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처벌	5.1% (24)	9.1% (43)	22.7% (107)	26.3% (124)	36.9% (174)	3.81	472

11)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 성인가해자에 대한 대책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사건해결의 중심에 두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에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자-피해자의 화해나 조정 등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이 사건해결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매우필요하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도 29%를 차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

개 선 방 안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균	사례 수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0.2% (1)	2.3% (11)	10.1% (48)	29% (137)	58.4% (276)	4.43	473

12)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가해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상담, 지도하고 선도 및 재활 치료(4.68)'와 '가해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4.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법체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4.54)',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복(4.39)', '피해자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사건 해결과정에 가해자의 사과 유도(4.22)', '화해과정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4.09)', '피해 가해 학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 개선(3.94)',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3.9)', '가해 학생이 학교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입(3.8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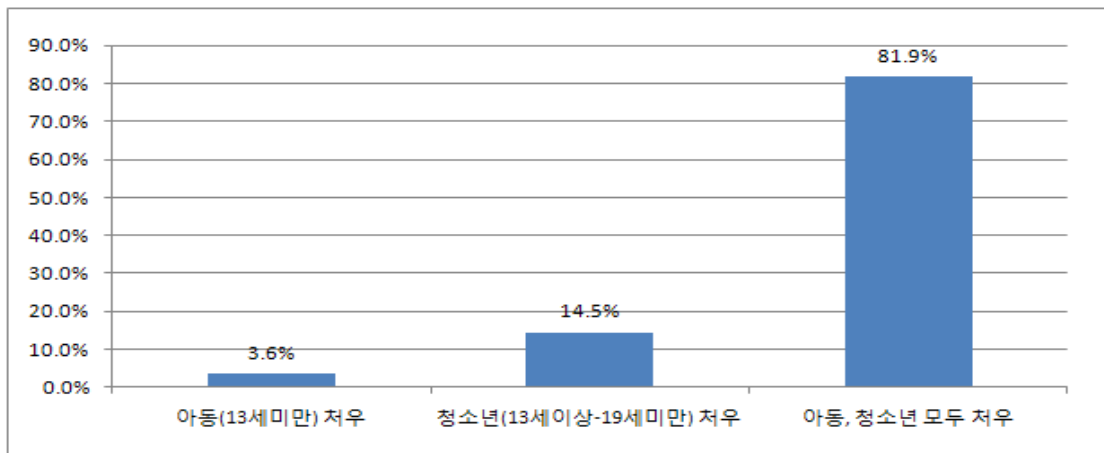
표 13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한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복	0.6% (3)	2.5% (12)	10.2% (48)	30.3% (143)	56.4% (266)	4.39	472
가해 학생이 학교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입	2.1% (10)	7.4% (35)	25.3% (120)	35.4% (168)	29.9% (142)	3.84	475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2.8% (13)	8.9% (42)	18.4% (87)	35.6% (168)	34.3% (162)	3.90	472
피해 가해 학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 개선	8.6% (41)	8.6% (41)	10.3% (49)	25.1% (119)	47.3% (224)	3.94	474
가해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상담, 지도하고 선도 및 재활 치료	0.2% (1)	0.6% (3)	3.8% (18)	21.2% (101)	74.2% (353)	4.68	476

사법체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	0.2% (1)	1.3% (6)	6.7% (32)	27.6% (131)	64.2% (305)	4.54	475
피해자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사건 해결과정에 가해자의 사과 유도	2.3% (11)	3.6% (17)	14.3% (68)	29.6% (141)	50.2% (239)	4.22	476
화해과정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2.7% (13)	5.3% (25)	17.1% (81)	30% (142)	44.9% (213)	4.09	474
가해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0.4% (2)	0.8% (4)	4.8% (23)	17.6% (84)	76.3% (363)	4.68	476

13)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처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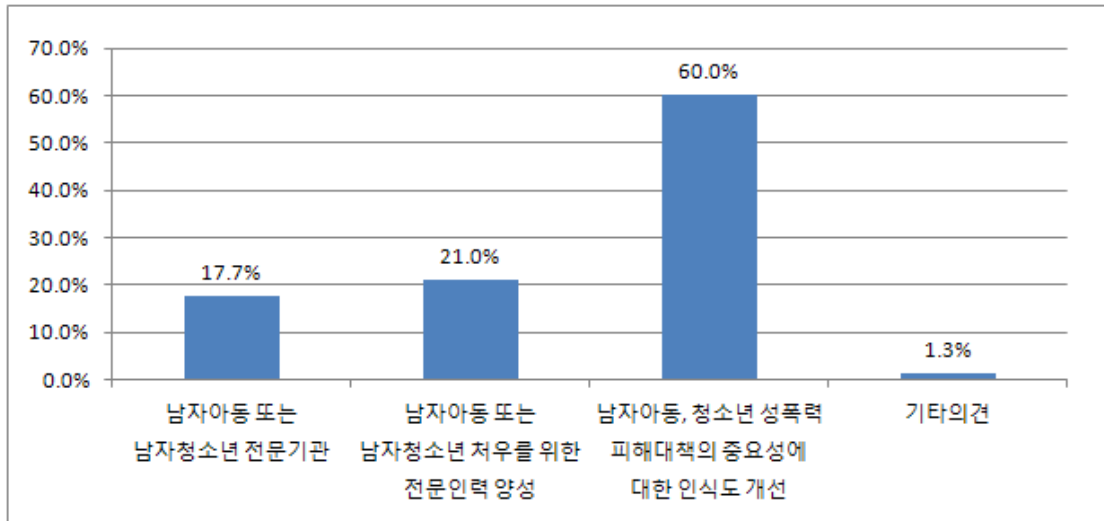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처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동, 청소년 모두 처우(81.9%)'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청소년(13세이상-19세미만) 처우(14.5%)', '아동(13세미만) 처우(3.6%)'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 처우여부

14)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남자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6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남자아동 또는 남자청소년 처우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21%)', '남자아동 또는 남자청소년 전문기관(17.7%)'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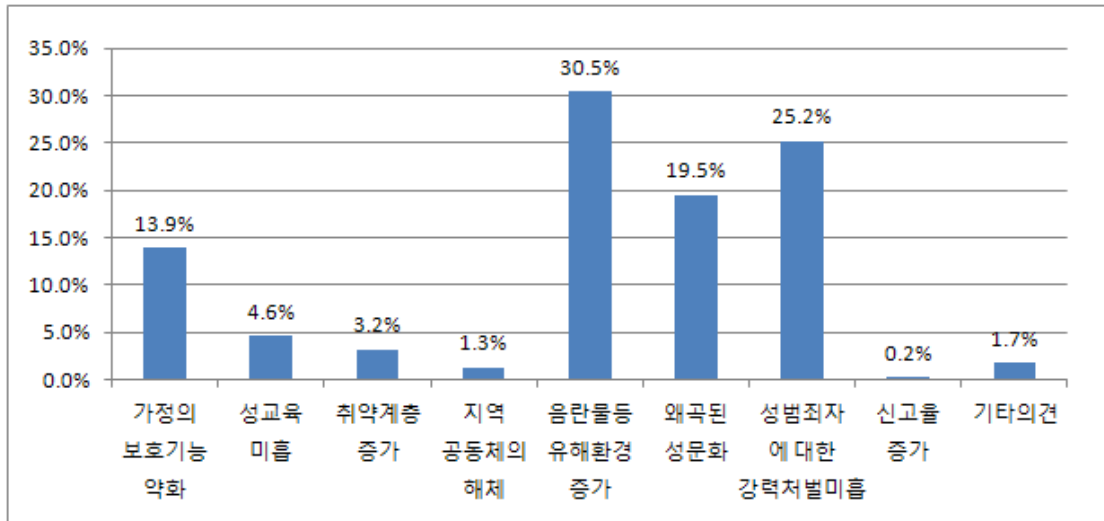
기 타 의 건

- ✓ 남자에 대한 성폭력의 중요성 인지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다.
- ✓ 전문기관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전문인력을 중앙에 몇 명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 ✓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데 급급한 것보다 물론 피해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교육이 강화되고 우선시되어 멀리 내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정부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음란물 등 유해환경 증가(30.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미흡(25.2%)', '왜곡된 성문화(19.5%)',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13.9%)', '성교육 미흡(4.6%)', '취약계층 증가(3.2%)', '지역 공동체의 해체(1.3%)'순으로 나타났다.



기 타 의 견

-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
- ✓ 가해자의 인지적 왜곡에 대한 심리상담 부족 및 자립지원 부족
- ✓ 사회문제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이유를 고를 수 없음, 최초의 문제의 출발은 가정의 보호기능의 약화가 있음
- ✓ 전문가가 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 부모들이 아동에 맞는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설정이다. 모든 가정이 성교육전문가가 된다면 성범죄자가 예방이 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가정 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 ✓ 타인의 인권존중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문제
- ✓ 형 높아지지만 실행률이 낮고,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상태로 해서 집행유예로 되는 경우

【그림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16)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의 실효성 정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들의 실효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성폭력 상담(4.13)'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보호시설 운영(4.04)',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체계(4.03)', '성교육(3.93)',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3.47)',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3.83)',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3.64)', '전자발찌제도(3.19)', '화학적거세제도(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의 실효성 정도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음	평균	사례 수
성교육	1.1% (5)	7.4% (35)	24.5% (116)	31.3% (148)	35.7% (169)	3.93	473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1.1% (5)	6.1% (29)	26.5% (126)	41.4% (197)	25% (119)	3.83	476
성폭력 상담	0% (0)	2.3% (11)	18.1% (86)	44% (209)	35.6% (169)	4.13	475
보호시설 운영	0.2% (1)	5.9% (28)	20.2% (96)	37.1% (176)	36.6% (174)	4.04	475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체계	0% (0)	5.1% (24)	22.2% (105)	38% (180)	34.8% (165)	4.03	474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3.2% (15)	13.8% (65)	33.7% (159)	31.6% (149)	17.8% (84)	3.47	472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3% (14)	11.6% (55)	30.6% (145)	27.8% (132)	27% (128)	3.64	474
전자발찌제도	5.9% (28)	24.4% (116)	30.9% (147)	21.9% (104)	16.8% (80)	3.19	475
화학적거세제도	9.3% (44)	21.4% (101)	26.1% (123)	21% (99)	22.2% (105)	3.25	472

17)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에 동의하는 정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4.7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해 피해 아동,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명령(4.71)',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4.68)', '예비부부 및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4.66)', '성폭력 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4.65)',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의 협력 강화(4.56)',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자유형 부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 강화(4.46)', '성폭력 관련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제도 개선(4.4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응급키트 파일링제도 도입(4.29)',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기관 분리 운영(3.94)'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자유형 부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 강화	1.1% (5)	2.9% (14)	6.7% (32)	27.8% (132)	61.5% (292)	4.46	475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0% (0)	0.4% (2)	4.2% (20)	15.9% (76)	79.5% (379)	4.74	477
예비부부 및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0% (0)	0.8% (4)	5.3% (25)	21.2% (101)	72.7% (346)	4.66	476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의 협력 강화	0% (0)	2.1% (10)	7.6% (36)	22.1% (105)	68.2% (324)	4.56	47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응급키트 파일링제도 도입	0.4% (2)	1.1% (5)	15.4% (73)	34.9% (165)	48.2% (228)	4.29	473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기관 분리 운영	4.6% (22)	6.9% (33)	18.3% (87)	30% (143)	40.1% (191)	3.94	476
성폭력 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0.2% (1)	0.2% (1)	5.2% (25)	22.9% (109)	71.5% (341)	4.65	477
성폭력 관련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제도 개선	0.6% (3)	2.7% (13)	9.9% (47)	26.1% (124)	60.7% (289)	4.43	476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0% (0)	1% (5)	5% (24)	19.1% (91)	74.8% (357)	4.68	477
가해 피해 아동,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명령	0% (0)	0.6% (3)	3.6% (17)	20.1% (96)	75.7% (361)	4.71	477

IV.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피해자 생활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증상과 장기적인 증상으로 나누어 대처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손상된 상품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권희경, 장재홍, 2003 : 37),’ 낮은 자아존중감 등으로 인해 성인으로서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자의 경험이 차후 범죄가해자가 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증상의 치료와 심리상담은 원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복귀한 후에는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wee센터 등 청소년지원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인용한 한 아동성폭력피해자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장기적인 서비스와 근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해서 가보면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기관마다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여 여러 곳을 가야 된다. 기관들이 왜 연계만 하고 직접 지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상담이 밀려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아닌 상담소는 3개월, 10회, 20회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피해아동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10여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먼 길을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사후서비스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피해아동·청소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부모들은 그들의 경제활동을 당분간 그만두어야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치료의 어려움은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의 해결도 어려운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또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고 2차 피해의 우려가 많아지게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은 그러한 어려움이 더 크다. 다음 인용은 그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셋인데 지금 현재 가스, 전기, 전화 모두 끊겼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안내를 해주셔서 생계비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기간을 기다려야 해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어 월 평균소득, 치료기간,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액수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160만원-3000만원)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인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의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과 별도로 피해아동·청소년 가족이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피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모색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9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이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되면 피해자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소문이나 왕따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피해신고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왕따나 괴롭힘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인들은 모두 피해자 신원노출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동성폭력 대응매뉴얼을 보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학교에 퍼져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장이나 교사들 스스로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잘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구의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퍼뜨리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해 순식간에 사실이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막는 1차적인 방안일 것이다.

(4)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정착 노력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처벌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교사, 학교장, 의료인, 피해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및 장, 아동복지사 등으로 이들은 성폭력의 발생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윤덕경 외, 2011 : 65). 이처럼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인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또는 발생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아니면 형사사건화 하기 보다는 가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꺼리게 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수십, 수백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과 함께 이미 6개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동성폭력 대응매뉴얼이 실제상황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위크숍의 형태로 모의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연구(이춘화, 윤옥경, 황의갑, 전해진, 2010 : 330)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에 협조를 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작성도 이루어져야한다.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는 혐의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아동·청소년과 가해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2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과태료 등의 방법으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지원을 하는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역량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부정적 자기낙인(self-labeling)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래 한 피해청소년의 얘기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모두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마치 성폭력 피해자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한다. 주변에서의 과도한 관심과 개입이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만약 상담을 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내가 정하겠다.”

이 경우는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기관이 아닌, 위센터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은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고 향후 다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해를 통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치료나 상담을 강요하는 것은 치료효과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반대로 피해아동의 치료 필요성이 있고, 본인이 원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아동을 위해서 치료명령을 보호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

야 한다.

(6)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강화되어야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을 증대해야 한다는데 대다수(91.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기술이나 갈등조절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가족성원간에 유대나 애착이 강하지 않거나 부모의 알콜문제, 폭력문제가 심각한 경우, 또는 부모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정에서 아동청소년 자녀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의 그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이러한 자녀교육 기술의 부족이나 가족유대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미국사례와 같이 부모양육 기술(parenting skills)이나 가족유대 강화 프로그램(family strengthening programs) 등을 통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피해자녀뿐 아니라 피해가정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충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친족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치료와 상담의 필요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이러한 가족상담을 위해서는 가족치료 등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7) 방문 서비스 등 지원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

앞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치료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다 부모가 항상 동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 아이 혼자서 먼 거리의 기관을 오간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가능성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아래 사례에서와 같이 치료를 받지 않고 옆길로 새는 것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아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상담소로 가는데, 가끔씩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버린다. 일하는 엄마로서 상담때마다 아이와 동행하기는 어렵다. 방문상담이 가능하면 좋겠다.”

방문상담은 아이와 함께 오지 못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이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문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담치료 인력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한다.

(8) 피해의 중첩성에 대한 인식 및 재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성폭력의 경우, 특히 아버지나 계부에 의한 성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아동 또는 청소년은 이러한 폭력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고, 그 후에는 성매매로 생존을 이어가게 된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청소년의 7.2%, 여학생의 9.2%가 강간미수나 강간의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소년원 수용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경험율이 38%로 높았으며, 여자시설청소년의 경우 58%에 이르렀다(윤덕경 외, 2011 : 196).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가 2012년 9월에 10대 가출소녀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0%가 성폭행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수가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경향신문, 2012년 9월 23일자). 이처럼 성폭력은 가정폭력, 성매매와의 중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때문에 가출을 한 청소년들은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의 경계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아동의 삶의 궤적을 미루어볼 때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은 성폭력의 피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축적과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모두 갖게 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9) 남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들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얘기할 때는 주로 여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실상 적지 않은 남자아동과 청소년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2011년 해바라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아동·청소년은 전체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그것을 노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따라서 지원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해 여성경찰관과 여성심리상담가를 확보해 준대 반해서 남자 아동·청소년은 수적으로 적다보니 자신들

의 이야기를 여자경찰관과 여자상담사 앞에서 털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마다 남자상담사나 남자경찰관의 상주를 요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자아동·청소년의 이러한 점을 치료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의 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현재도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신문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의 관련예산이 그 전 해보다도 감소하여 248억이었는데 이 중 의료비는 10억 3천 백만원으로 치료인원 9,720명에게 지원된 금액이 1인당 6만 천원에 머물러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를 자체부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경향신문, 2012. 9월 5일자). 이러한 국가지원의 부족은 상당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3세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은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기관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이었다. 앞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은 성폭력피해 극복과정이 성인과는 다르다. 아동피해자의 경우 피해복구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가족을 치료하는 것을 병행해야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고, 특히 아동 친족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양육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또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전학이나 자퇴 등 학교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아동피해자가 부모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알리면 치료나 상담을 중단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차이점을 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needs)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피해자와 청소년 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3) 아동·청소년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확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지원 정책으로써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선정되었다. 성폭력의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중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상담, 치료,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 가정내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아니면 가정적인 갈등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기존의 청소년쉼터나 그룹 홈 등에 연계될 수 있는데, 다양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공간보다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용공간의 필요성은 이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윤덕경 외, 2011 : 368).

(4) 시설 및 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시설간의 기관간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피해자 지원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infrastructure)이다. 기관간 연계와 협력은 서비스 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역할 중복 조정을 통해 가증 효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보면 긴급지원센터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이어지는 종적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사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관 및 시설들 간의 횡적 연계와 협력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폭력피해자 어머니와의 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기관들이 다른 기관을 연속적으로 연계만

하고 실제 지원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부족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다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는 시설 또는 기관의 수용능력이나 상담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신속하게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서비스를 찾아다니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아동보호여성 지역연대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논의될 것이다.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1)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선정되었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유해환경 증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이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이 지역 내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당국에서 관련 수업시간과 연계되어 안전지도 제작을 필수 수업 내용으로 지정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된 안전지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주변 일대 환경과 지역개발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적으로 위험지역 확인을 새로 업데이트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상가 사람들이나 아동의 부모들도 위험지도의 결과물을 바로 받아보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전지도 활용이 결과물 업데이트나 공개 활용 측면에서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한 예로 강원도의 경우, 전체 353개 초등학교에 학교 당 한 개 팀만 구성이 되었는데 아동의 실질적인 지도제작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지도제작 자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전반적으로 지역연대 회의 시 일반 상담소나 관련 지원센터에 비해 범죄예방을 본 업무로 담당하는 검찰, 법원, 교정 등의 국가기관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 및 형벌 집행을 담당하는 형사사법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지역연대 업무에 전제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아동성폭력 범죄예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나 기관장 레벨의 위원참여가 실질적인 기관 간 파트너십 수립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협의 및 사례관리협의를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위원 역시 보다 실무자급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회의를 각 참석자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장소를 바꿔서 운영하거나,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대표자 1인 외에 회의 논의를 주관할 수 있는 기관 별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일부 지역연대(ex. 순천시)의 경우 여기 저기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내 사업들이 지역연대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연대는 기존 사업들과 지역연대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기존 사업들이나 회의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연대 특징이 퇴색되고, 다른 협의체와의 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지역연대의 긴급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도 전체 운영위원회가 정기회의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모임이 비교적 탄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기관마다 다르고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소집이 각 기관의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날짜를 미리 공지했음에도 운영위원회 참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회의 참석을 관련 단체들에게 설득하고 독려, 강제할 방법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설사 어렵게 긴급회의가 이루어져도 통합관리를 주도해야 할 지역연대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많은 지역연대에서 1차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을 잘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인 아동·성폭력 사후 피해지원 업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자체가 적어 지역연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 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지원 서비스 기관과 사전에 접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지역 연대를 통해 피해 고위험 아동의 반복피해를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후 개입,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 피해아동 지원 문제를 지역연대 속에서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관찰 및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개입할 방안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대전의 경우, 지역연대 업무에서 피해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 어디에서부터 개입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 개입범위가 너무 넓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단순히 통합하는 차원이라면, 각 기관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지역연대의 성격이나 개입 역량, 재량의 모호성 등으로 역할 갈등이 우려되는바, 구체적인 지역연대의 업무 범위를 다시한번 지역 상황에 맞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6)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대다수의 지역연대 담당자들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평가방식이 보다 정교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항목구성이나 평가방법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세부항목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너무 세세하게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어 내실 있는 기본관계 형성 및 지역연대 인프라 구축을 만드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들이 평가지표 결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기본적인 지역공동체회복 자체를 평가하는 보다 항목 수를 단순화시키면서 실질적인 기관 특색 중심의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지역연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기존사업이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이 평가방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자체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지역연대 운영이 필요하다. 만약 특정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예방 사업(배움터지킴이 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이 인적 구성원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인력 구성을 바꾸어 나가는 시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새로운 우수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8) 읍면동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 실시 필요성 문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대다수(72.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 단위 지역연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ex. 보건 진료소) 등을 이용하여 지역연대 예방 사업이 쉽게 읍면동 단위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비용-편익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읍면동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바, 어떤 방식으로 각 기관 환경에서 마을 단위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논의해야 할 것이다.

(9)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일반적 지역연대 운영비는 720만 원 정도로 대부분 참가 위원들의 인건비 및 식사비로 그 지원비가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회의비 이외에 지역연대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통합관리 시스템 예방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구 자체 경비로 지역연대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구청 내 여성정책팀,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팀들과의 업무 연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연대 고유의 통합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10) 남자아동 성폭력피해 지원 미비 문제

대부분의 지역연대가 남자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아동은 보통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남자아동 지원 여부는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관할 지역 내 성별에 따른 전문화된 개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도 충분치 않다는 것도 사후 피해자 지원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성폭력 피해가 여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 피해지원 및 개입 서비스조차도 개별 피해자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역연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반복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ex. 강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사후지원 서비스가 지역연대를 통해 보다 일반화·전문화될 수 있다면, 그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별-적합(gender-specific) 치료 차원의 남자 피해아동에 적합한 개별화된 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역연대에서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공동체의 성폭력예방 역할 강화방안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열거한 열 가지 이슈들이 현재 운영 중인 “지역연대” 활동 개선안에 초점을 둔 “실천 중심의 제안”이라면, 이번에는 철학적·개념적 차원에서 서로 상이한 지역 환경과 역사, 자원들을 가진 개별 지역사회가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어 “이론 차원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지역사회공동체 회복 없이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등의 국가형사사법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이 그 기본 역할 차원에서 고유의 업무를 잘 이행해 주고, 보다 유기적으로 지역공동체들이 다양한 자원과 경험, 정보, 기술, 노하우들을 사회 내에서 긴밀하게 공유해야 진정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하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연대 개선안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

첫째, 국가 범죄예방 기관들과 지역사회가 보다 긴밀히 파트너십(partnerships)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Finkelhor(1990)가 제시한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에서도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것(targeting high-risk population)과 처벌을 통한 성범죄자 문제행동 억제(deterrence)가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대(solidarity)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부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연대가 계속 검찰이나 법원 등의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들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참석 자체를 확보하지 않아 현실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활동을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예방 또는 3차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도 법원이나 검찰, 경찰, 교정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역연대 참여가 없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위험군 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즉, 고위험군 판단 기준 및 도구는 형사사법 기관들의 예리한 범죄분석과 정보수집 능력, 그리고 재범 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법 집행, 사법, 교정 기관들이 지역사회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고,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다가가서 개별 감독과 처우를 제공해야 할 대상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형사사법 관련 국가기관들이 지역연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연대의 필요성 및 활동범위에 대한 논의를 관련 국가기관들과 강화하고, 형식적인 회의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범죄예방 수립 논의가 지역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 운영 지원경비나 활동 범위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연대 스스로가 실제 성범죄 문제행동 변화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단계별로 구체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무조건 지역사회 내에서 그 때 그 때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특정 예방분야를 가지고 끈질 길게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게 해야 한다. 안전지도제작과 같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top-down 방식”의 범죄예방활동도 의미 있지만, 때로는 지역사회 자체의 강점을 살린 오랜 경험 노하우가 있는 “bottom-up 방식”의 예방활동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에서도 범죄예방 활동을 1차-2차-3차 예방 전략으로 나누어 놓고,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준의 1차 예방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 그리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유죄 확정에 대한 3차 예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차 예방은 건강한 가정환경의 아동이나, 일반 교육기관, 정상적인 부모 등을 상대로 한 활동으로 그 예방효과가 눈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투입 비용도 많이 드는 특징이 있다. 반면, 2차 예방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가장 취약한 가정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써 1차 예방보다는 투입 대상이 한정되고, 그 활동 내용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사회 특징에 따라 1차 또는 2차 예방이 필요한 경우가 모두 다를 수 있다. 1차 예방도 일반 아동들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성역할

인식 변화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연대 주력활동이나, 때로는 지역 내 치안환경 변화와 자원 보유 능력 등에 따라 1차 예방과 2차 예방활동 중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3차 예방 역시 무조건 교도소나 보호관찰관소와 같은 교정기관이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해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통합과 사회복귀, 재범억제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때가 있다. 한 예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 우범자나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면, 지역사회공동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 순찰활동이나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리, 전달 등의 3차 예방활동에 주민이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연대의 특정 주력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그 단점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공동체의 회복과 민간 파트너십은 처음 딱 한 번의 시도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 지역사회 자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들이 하나의 통합된 새로운 힘으로 거듭 나야 가능한 것이다.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연대 주력사업이 개별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몇 가지로 구체화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비판이나 지적”이 아닌 “발전과 화합”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역연대 평가방식이 수정·변화되어 특정 활동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환경에 따라 1차 예방이 더 필요한 곳도 있고, 혹은 잠재적 피해자 집단을 먼저 고려하여 2차 예방에 힘써야 할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인적, 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특정 지역에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 3차 예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역사회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활동들이 중단 없이 매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되고, 지역사회공동체 참여를 통해 매년 추적조사(follow up study) 결과가 공유되는 신속한 피드백 시스템이 지역연대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공동체 회복은 단순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나 CCTV 증설, 범죄전문가 시민교육, 보안강화 도시설계, 또는 특별 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개별 활동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활동들이 지역사회공동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관련 집단들의 신뢰를 전제로 했을 때 진정한 범죄예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개별 환경에 적합한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활동을 1차, 2차, 3차 예방전략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것을 주민 파트너십 속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효과적인 환류 체계를 지역사회공동체 내에 구축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¹⁾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1. 서론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피해의 회복’을 범죄해결의 중심에 두자는 이론이다. 응보적이고 가해중심적인 범죄해결과정과 회복적이고 피해 중심적인 두 범죄해결방법 모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범죄해결방법은 그 지향점이 다르고 과정도 결과도 다르다. 전자는 피해자에게 본인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구를 피해자 별로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하지만 후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별로 피해회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또 다른 가해행위인 응보가 아니라 피해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범죄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 그래서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소년법에 의한 특별절차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의한 성인 피해자는 오히려 범죄해결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인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놓치지 않고도 소년성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회복적 사법정의이다.

1) 이 글은 본원의 2012년 고유과제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의 일부로써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II. 회복적 사법정의의 이론적 배경

(1) 회복적 사법정의모델의 배경

피해자가 기존의 형사사법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회복적 사법정의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학이라는 학문적 태동과 맞물려, 피해자운동에서 회복적 사법정의가 많이 연구되었다.(김용세, 2011)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노심과 복수심을 충족시켜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의 회복 또는 충족에 기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회복적 사법절차가 피해에 대한 회복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Walgrave, 2000 : 255)

회복적 사법정의는 피해자 중심적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학의 연구와는 다르다. 회복적 사법정의의 또 다른 뿌리는 공동체주의이다. 포스트모던한 서구사회의 파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혹은 비공식적인 상호 지지와 통제의 유기적 재원으로서 공동체가 재등장하고 있다(McCold, 1996). 이들에게 공동체는 회복적 사법정의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공동체는 재통합적 수치심유발(reintegrative shaming)과 회복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수단이다.(Braithwaite, 1989)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회복적 절차를 달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된다.(McCold, 1996) 그 밖에도 회복적 사법정의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운동과 경향이 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운동, 토착민 해방운동, 종교운동 등이 그것이다.(Walgrave, 2000 : 255) 사실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이들 사이에 근본적 공통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피해자 중심적 관점은 다른 사고 조류와 융화되어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해방적' 관점에 기초한 폭넓은 사법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회복적 사법정의라 불리고 있다.(Walgrave, 2000 : 255)

(2) 개념정의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용어는 알버트 애글래쉬가 1977년 처음으로 문헌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Walgrave, 2004 : 543). 그러나 이 용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5년 하워드 제어가 피해자-가해자 화해/조정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한 때부터였다고 한다(Hole

& Young, 2002 : 529).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중후반 사회복지학에서 ‘회복적 정의’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형법학에서 2000년 이전에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로 연구되다가 2000년도 이후부터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는 관련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사법으로도 해석가능하고 정의로도 해석 가능한 ‘justice’라는 용어를 없애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안적 용어를 제안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한다. (Hole & Young, 2002 : 527).

아직까지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확립된 정의는 없다. 2000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UN의 제 10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에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비엔나 선언’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을 권장하고 있는 동보고서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한 어려움은 회복적 사법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사용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 ‘relational justice’, ‘positive justice’, ‘reintegrative justice’, ‘transformative justice’, ‘reparative justice’, ‘satisfying justice’, ‘community justice’, ‘social justice’, ‘Peace Justice’등이 사용된다. 이는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형식 등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이백철, 2002 : 142).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공통적 요소인 목적, 결과,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들, 특별한 절차, 프로그램 등의 어느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Hole & Young, 2002 : 527).

가. 기존의 형사사법과의 비교를 통한 개념정의

회복적 사법이 무엇이라는 정의가 한마디로 내려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형사사법과 비교를 해가면서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들을 설명한다.(Zehr, 1990 : 211) 응보적인 형사사법에서는 범죄를 국가 및 국가의 규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법제도는 범죄자의 유죄를 확인하는데 무게중심을 둔다. 그래서 범죄자에게 일련의 고통이 부과하여 범죄를 해결한다.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남김없이 찾아내는 과정에서 범죄자는 국가에 대적하게 되고, 결과물에 보다는 규칙과 의미에 더 비중을 두게 된다. 결국, 한 쪽은 승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패자가 된다.

이에 비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법제도도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정의는 대화와 상호합의를 독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충족되고 개인 및 관계의 치유가 어느 정도로 장려되었는가 하는 결과가 중요시된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과 기존의 전통적 형사사법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존의 시스템도 피해자를 무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과거지향적으로 비난일색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재사회화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미래를 향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정의를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김성돈(2005 : 420이하)은 회복적 사법과 기존 사법과의 차이에 대해서 ‘1. 절차상의 차이, 2. 대응방식의 차이, 3. 감정적 요소의 배제와 감정적 요소의 활용, 4. 국가의 역할 차이, 5. 커뮤니티의 역할 차이’를 비교점으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로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예방적 형사사법은 여전히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범죄자의 규범순응적 행동을 목표로 하여 처우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사법을 완성하게 된다. 응보적 형사사법, 특별예방적 형사사법,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소년사법의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의 비교

	응보적 형사사법 (소년형사사건)	특별예방적 형사사법 (소년보호사건)	회복적 사법
초점	범죄	범죄자(가해소년)	관계
범죄에 대한 대응	형벌	처우	회복
목적	예방	순응	회복
피해자의 지위	이차적	이차적	중심적
사회적 맥락	권위주의	복지, 교육	민주적
소년의 반응	분노	종속	책임

* 출처 : Wernham, M.(2005), p.125.

소년사법의 경우 현재 특별예방적 형사사법에 속한다. 현행 소년사법은 범죄보다는 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소년이 규범에 순응하는 건전한 일반시민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범죄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이차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응보적 형사사법에서는 피해자의 응보감정이 충족될 수도 있었지만

소년사법에서는 응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교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소년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처분에 종속되게 된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피해의 회복을 통한 관계의 회복이다. 가해소년은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격리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본인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피해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피해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피해의 회복을 민주적인 맥락에서 범죄를 소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해소년,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나. 순수론과 확장론에서의 개념정의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는 있다. 이것은 실천모델에서 기존의 형사사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립적인 정의이다. 먼저, 절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마샬이 제시한 ‘특정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가 그 범죄가 미친 영향 및 그 범죄가 장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절차’라는 정의가 있다.(Marshall, 1996 : 37). 이는 루벤선언(1997)과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NGO동맹이 채택하였고 순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순수론의 입장에 의하면, 범죄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상호협력에 의하여 결과의 취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요구를 충족해야하고 그에 의하여 피해자, 가해자 기타 사람들의 재통합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가 충족되고, 피해자와 범죄자 간의 모든 종류의 분쟁해결, 피해자 또는 범죄자와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 간에 존재하는 분쟁해결의 기회가 관계자들에게 제공되고, 또한 범죄자에게 사죄와 회복활동을 통하여 용서받을 기회가 부여된다고 한다.(조현지, 2008 : 49) 즉, 순수모델 입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①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 ②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화해의 절차 ③ 사회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들고 있다.(이호중, 2004 : 501-503)

또 다른 개념정의는 웰그레이브 등이 주장한 것으로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정의를 이루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된다(Walgrave, 2000 : 254).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가 회복적 이라면 회복적 사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강제적 회복적 제재도

회복적 수단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모델을 확장론 또는 최대화모델(maximalist model)이라고 한다. 김용세(2005 : 226-231)는 순수모델을 협의의 회복적 사법, 확장론을 광의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확장주의자는, 순수론자의 정의에 대해서 회복적 사법의 핵심을 단순히 절차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회복적 사법의 여러 원칙 중 ‘대화, 대면’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재들을 회복적 사법의 범주에 넣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한다. 그리고 확장론자들은 순수론자들이 회복적 사법조치가 ‘특정한 범죄의 이해당사자’가 모이지 않고도 수행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해자가 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도 회복적 사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Walgrave, 2000 : 255) 그래서 확장주의자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 폭은 순수론자들보다는 더 넓어지게 되고 이러한 정의를 광의의 회복적 사법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김용세, 2005 : 226-227)

순수론, 확장론 모두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에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등의 사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모색해가는 자율적 협동절차를 통하여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과정 또는 절차를 강조하는 순수론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정의개념 자체에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이 정의 개념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범죄의 이해관계자인 피해자,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회복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치료중심적이거나 비난적, 또는 특별예방적이어서는 안된다.

순수론의 입장이든, 확장론의 입장이든 회복적 사법에 대한 개념정의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칙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들게 하는데,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란 무엇인가? 그 손해를 누가(무엇이)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 손해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사법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손해, 피해자, 회복, 사법정의의 달성에 관한 질문에 답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Walgrave, 2000 : 260)

다.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

가) 피해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사법의 중점을 두는 태도는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회복적

사법을 전통적인 응보주의 및 특별예방주의 형사사법모델로부터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패러다임의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범죄가 야기한 피해를 통하여 고려되어야하고, 범죄에 대한 주된 반작용기능은 처벌도 재사회화도 아닌, 피해의 회복 또는 보상이라고 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알려진 가해자가 없더라도 작동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알 수 없어도 피해자에 대한 지지, 원조,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잡히지 않더라도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의 회복적 행동을 통해 더욱 회복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질적 손실, 신체적 상해, 심리적 결과, 관계상의 문제 및 사회적 기능장애(범죄의 발생으로 야기된 이상) 등 모든 종류의 피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응보주의는 추상적인 사법도덕적 질서에 대한 손해를 고려하고, 가해자에 대한 평등한 피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 특별예방주의는 피해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법기관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춘다.

나) 피해의 산정

손해를 누가 입었다고 봐야하는가와 관련한 피해자의 범주문제가 논의 될 수 있다. 현실의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상해와 손실이 회복적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회복적 사법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정의하거나 공동체가 입은 손해를 구체화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회가 피해자로 간주되어야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사회를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면 국가가 스스로를 주된 피해자로 설정하고 현실적 피해자는 부수적인 위치로 밀어내버리는 응보주의적 상황으로 후퇴할 수 있다. 학자들은 공동체를 필수적 요건으로 넣으려고는 하지만 공동체에 사회를 포함하여 정부가 다시 피해자의 대변인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화된 사회는 범죄의 해결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된다. 회복적 사법에서 가정 어려운 일이 현실의 회복적 절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규범강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또는 정부)의 역할을 상정하는 것이다.

다) 회복

어떻게 회복이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절차와 그 절차의 결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논점이 있다.

첫째, 달성 가능한 회복적 결과는 원상회복, 보상, 배상, 화해 및 사과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들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고, 구체적이거나 상징적일 수 있다. 문제되는 피해의 성격에 따라 회복적 결과는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공동체로 정향될 수 있다. 일부 피해자 원상회복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그러한 행동의 전형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무가의 창의성에 따라 아직까지 생각해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회복을 고안해낼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회복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가구 손괴의 경우에 피해자가 가구의 구입 비용보상과 가해자의 가구 쇼핑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가구를 구입하는 과정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²⁾

둘째, 회복적 결과를 목표로 하는 상이한 절차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구별기준은 자발성이다. 회복적인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별적으로 또는 친척의 후원으로) 사이의 직간접적인 자발적 협상과 협조 절차이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회복적 그룹 회합 등). 그러나 (사법적) 절차와 강제가 회복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분분하다. 순수모델 지지자들은 회복적 사법 절차의 자발성을 고수하여, 강제의 사용을 회복적 사법에서 배제한다.

라) 정의의 달성

회복적 사법정의는 회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옳고 그름의 주관적 균형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받는다는 평등감을 말한다. 그렇다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의 최적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보상 및 공동체 지원이 자기의 고통과 손실과 합리적 균형을 이룬다고 느껴야 한다. 가해자는 사회적 수인한계를 침범하였고,

2) 가구손괴사례는 2011년 8월 11일 회복적 사법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하워드 제어(Howard Zehr)교수 초청 공개강연에서 제어교수가 든 사례이다.(하워드 제어(Howard Zehr) 초청 공개강연, 일시: 2011년 8월 11일 (목) 14:00~15:30, 장소: 이화여대 법학관 231호, 주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자기의 잘못을 건설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느껴야 한다.(Walgrave, 2000 : 262)

한편 정의는 적법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회복적 절차와 그 결과가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법적 보장조항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의 자발적 해결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예를 들어, 조정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참여는 어떤 식으로든 부과될 수 없고, 합의는 손해의 심각성과 당사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용인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Walgrave, 2000 : 262)

강제적 절차가 개시되면, 적법성, 적법절차 및 비례성원칙 등 법적 보장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본질적으로,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 국가와 사법시스템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일으킨다.

라. 확장론과 소년사법

회복적 사법의 도입 논거 중에는 기존의 공식적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그로 인해 회복적 사법을 ‘공동체주의적 절차’로 생각하고 절차에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비공식적, 자발적 해결의 장점에 주목하여 공식화와 국가의 지배에 의한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절차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시스템으로부터의 다이버전으로 유지하고자한다.

회복적 사법을 다이버전의 일종으로 받아들이자는 학자들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최대한 많은 사건을 끌어내려고 한다. 그들은 공동체에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적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적 접근방법의 범위를 확대하는 설득력 있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적 갈등을 시스템 외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을 개선하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킨다. 또한 범죄에 대한 자발적, 회복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태도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사법부에게 개입 권한의 사용을 더욱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형사사법시스템에는 관여하지 않으려한다.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동체와 협력하여서는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시스템을 자신들의 성찰과 실험에서 아예 배제시킨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정부적) 공식적 대응을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 특별예방적 사법이 맡게 된다.

이것은 순수론자 자신들이 지적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기존의 형사사법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회복적 사법실무가 다이버전으로서의 옵션으로만 존재한다면, 심각성이 덜한 사건만 회복적으로 해결에 맡겨지기 쉽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일수록 배상과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더 큰 피해를 외면하는 사법패러다임이 되고 만다.

회복적 사법이 관련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가해자 및 공동체 사이의 자발적 해결모델만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던 응보적 형사사법에 대한 예외가 될 뿐이다. 웰그레이브는 이것을 ‘형사사법이라는 중핵의 주변부에 자리잡은 부드러운 장식물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Walgrave, 2000 : 263)

회복적 사법에 관한 논문의 대부분은 조정에 중점을 두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조정절차에서의 대면은 회복적, 치유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정은 사과, 원상회복, 배상, 보상, 용서, 화해 및 재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공동체가 관여하는 경우, 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도 직접적으로 관찰 및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절차는 모두 관찰 및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한다.

회복적 사법 확장론을 주장하는 웰그레이브는 다음과 같이 조정(형태를 불문하고)을 회복적 사법의 동의어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Walgrave, 2000 : 264)

확장주의적 회복적 사법정의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해 회복적 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문제와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야한다. 그러나 조정은 범죄의 해결을 피해자와 가해자(및 그 친척)의 상호작용으로 축소시키고, 공동체의 불안과 요구는 무시한다. 그리고 조정은 힘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범죄를 회복적 접근 밖에 둬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확장론에서 해결해야할 두 가지 문제를 보여준다. 먼저, 범죄의 결과를 해결하는데 개별피해자와 가해자이외의 제3자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집합적 당사자가 관여해야하는지, 관여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여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마. 회복적 사법에서의 제3자의 필요성

모든 회복적 사법 논의에서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제3자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친척이 공동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Fattah, 1993) 오히려 별도의 제3자를 개입시키면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Harland and Rosen, 1990; Walgrave, 2000 : 265에서 재인용). 하지만 회복적 사법시스템에서 제3자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가해자 중심의 '교환'에만 중점을 두고 이것으로만 제한 한다면 범죄는 다시 두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되고, 범죄가 두 당사자사이의 갈등이라면 형법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진다. 민법은 2인 이상의 시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고소가 있을 때에만 작동되는 반작용이다.

반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다룬다. 형법은 스스로 작동한다. 형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절차를 개시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왜 국가가 가져갔을까? 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입은 피해는 공공의 법질서가 침해되었고 공공의 안전이 상실된다는 등의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서술밖에 할 수 없다. 사회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뒤집어 생각해볼 수 있다. 공동체(사회)가 범죄 발생 후에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결에만 맡겨두고 범죄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감소시킨다면 대부분의 범죄가 도박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다.

절도를 예를 들면, '차를 훔쳐서 잡힌다면, 피해자와 조정하고 차 값을 물어주면 되고, 다음날 또 시도하면 된다: 운 좋게 체포되지 않으면, 차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Walgrave, 2000 : 266)

이와 같이 제3자의 개입의 필요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으로서의 공동체와 국가의 각각의 역할은 설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브레이스웨이트는 도미니언(domin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 정부(국가)의 역할

회복적 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범죄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피해자가해자 이외의

제3자로써 ‘공동체’를 포함시키는데, 국가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애매모호하다. 회복적 사법실무가 지역적이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서 더 그러하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을 공식적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해자, 회복적 사법절차,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실무 운영기관과 공식적 사회(국가)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벤선언(Declaration of Leuven) (1997)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Walgrave, 2000 : 268).

범죄에 대한 반작용에서 공공당국의 역할은 다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을 위한 조건 마련;
- 절차의 정확성과 개인의 법적 권리 존중 보장;
- 자발적인 회복적 행위가 성공하지 못하고,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법적 강제 부과;
- 범죄와 그에 대한 공식 반작용이 순수하게 비공식적인 자발적 규제로는 불충분한 경우 사법적 절차 수행.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이 상정되면서 공동체와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정부는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와 나누어 가져야한다. 즉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은 범죄의 해결에 있어서는 공동체에게 권한을 넘긴 보조적으로 기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이고 근본적인 회복적 사법이념에서의 공동체와 정부의 역할이외의 실질적인 문제는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상황의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부인가 하는 점이다.

나) 회복적 강제

대다수의 회복적 사법 관련 문헌은 배상, 화해 및 재통합으로 이어지는 자발적 토론, 재통합적 수치심유발, 존중 및 공동체에 건설적으로 재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회복적 범죄대응이 그 적용범위를 넓히더라도, 그 한계로서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가해자로부터

그리고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낳는다. (Marshall, 1996 : 26). 바로 이점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다이버전’으로 받아들이는 순수론이 형사사법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서 기대고 있는 것이고, 확장론이 회복적인 강제적 사법시스템의 개발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 회복적 활동의 강제집행 가능성

정부(국가)의 강제적인 개입은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가장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다. 강제적인 회복적 제재에서는 대면적 없고 참여가 크게 줄어들며, 재통합이 불확실하고 배상이 유일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응보적 또는 특별예방적 제재보다 강제적인 회복적 제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피해자와 공동체에게 무언가 현실적으로 행해졌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응보적 대응보다 유익하다. 마틴 라이트는 응보적 대응을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로 균형 잡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손해의 양만 늘릴 뿐이라고 한다. (Wright, 1992 : 525)

둘째는 재사회화를 위한 제재의 효과와 같은 것이다.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공동체 내에서 회복적 제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회봉사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공동체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 재통합의 가능성도 높인다. (Walgrave, 2000 : 274) 재사회화 이념이 소년사법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동체 봉사는 대체로 재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나 공동체 또는 사회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공동체의 손실은 흔히 재교육 프로그램의 도구로 오용되기도 한다.

셋째, 범죄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Walgrave, 2000 : 274) 개인 또는 공동체가 회복적 대응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가가 회복적 원칙을 지키면서 범죄에 회복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강제적인 회복적 제재와 법

회복적 행위의 부과에 있어서 강제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부과된 원상회복 또는 사회봉사는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자유제한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의 공화주의 이론에 따르면, 형사사법의 근본적 기능은 모든 관련자(피해자, 가해자 및 기타 시민)의 ‘dominion’(모든 시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의 전 범위)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회복중심성은 이러한 관념에 적합해 보인다. 피해자와 시민의 dominion의 인식과 회복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통하여, 공동체 봉사에 의한 상징적 또는 (부분적으로)물질적인 배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물질적 배상과 심리적 회복으로 표현된다. Braithwaite와 Pettit도 회복적 옵션을 포함하는 ‘형벌’을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이는 곧 사회를 정연한 공동체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공화주의 이론에서, 어떤 자유의 제한도 당연히 정당화되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의 dominion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이익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벌의 parsimony’원칙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dominion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강한 간섭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최소 간섭적인 입법, 집행 및 양형 옵션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형벌과 같은 간섭 정책에 대한 대안 (dominion을 촉진할 수 있는) 을 능동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Braithwaite & Pettit, 1990 : 79-80)

따라서 회복적 사법정치는 범죄적 갈등에 대한 사법외적 해법을 우선시하게 되고, 공동체 내로 ‘dominion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parsimony는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론은 제재도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는 시민의 dominion에 대한 침해가 되고, 그 침해는 엄격하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당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형사사법 권리의 인식’에 구속되고, ‘그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을 증명하여야 한다.(Braithwaite & Pettit, 1990 : 75) 절차의 공식화는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비난(denunciation)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심적 정당화요소이고,’ 이는 ‘공동체에게 중요한 비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침해에 대한 공적 대응은 dominion의 방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는 공적 기관이 dominion을 지지한다는 안전감과 믿음을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적 절차의 공적 특징은 사회적 통제자를 공적 통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절차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힘의 관계에서 평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웰그레이브는 좋은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은 ‘만족가능성’이라고 하면서 이 요건은 범죄의 심각성과

허용되는 국가적 개입의 상한선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비례성원칙에 의하여 충족된다고 한다. 조정에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비례적이라고 느꼈음을 의미한다.(Walgrave, 2000 : 274)

그러나 이것은 원상회복이나 공동체 봉사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협상결과에 문제가 없고, 범죄와 보상 사이의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확장론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이다. 이론적으로, 비례성은 회복적 사법의 틀 안에서 구성될 수 있지만, 회복적 비례성은 전통적인 형법적 비례성의 원칙과 크게 다르다. 여기서는 범죄로 야기된 물질적, 관계적 및 사회적 손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회복적 노력의 정도 사이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올바른 회복’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설정, 올바른 회복, 회복적 비례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

호주의 캔버라에서 상점절도를 한 12세 소년에 대한 회합에서 그 소년의 어머니와 상점주인이 제안하고 회합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소년은 상점 앞에서 ‘나는 도둑입니다.’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서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회복적 사법의 절대적인 지지자인 브레이스웨이트에게 ‘회복적 사법의 미팅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하는가’ 등의 문제를 심사숙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Walgrave, 2000 : 275)

이 문제는 오늘날 형사정책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회복적 사법의 절차 속에서 주홍글씨가 재등장할 수도 있고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억압적 조치를 취해버릴 수도 있다.(이호중, 2009 : 11) 회복적 사법의 작동이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리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천 속에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치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철시켜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경향은 공동체주의적 경향과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나뉠 수 있다. 오늘날 회복적 사법 진영에서의 이론적 논의의 테마 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무한하고 탄력적인 잠재력을 순진하게 신뢰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자율적인 해결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놓여있다.(이호중, 2009 : 12)

(3) 공동체의 구축과 회복적 사법

가.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는 두 가지의 경향으로 발견된다. 하나는 브레이스웨이트로 대변되는 개인중심의 공동체주의이다. 그는 순수론의 회복적 사법을 염두에 두면서 회복적 사법의 절차에 대한 원리로 불지배(non-dominance)의 원리와 함께 공동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회복과 자유의 회복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한다. 그는 오늘날 공식적인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기준인 인권의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고 한다(Braithwaite, 2002 : 569; 이호중, 2009 : 12에서 재인용). 그러나 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의 원리는 회복적 사법의 절차에는 도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경향은 웰그레이브나 반 네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준수뿐만 아니라 회복의 원리로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한 시간의 노동봉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례성의 원칙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인권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지를 판별할 방법이 없다. 확장론에서 주장하는 ‘강제된 회복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며, 인권과 비례성의 원칙은 회복적 사법의 작동과정에서 한계가치로 설정되어있다.(이호중, 2009 : 12)

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는 다르게, 이호중(2009)는 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동체의 불확실성과 남용가능성에 대응하여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범죄를 민사적 사건화하여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한다. 그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위의 ‘공적 성격’을 제거하고 ‘사적 피해와 그것의 회복’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범죄를 사적 자치의 영역에 놓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손해상쇄의 법원리로서의 비례성의 원칙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이 폭넓게 참여하는 회합이나 서클 모델보다는 가

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모델에 훨씬 친화적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피해자의 손해의 회복은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라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손해의 회복은 피해자가해자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제3의 대리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왔다갔다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손해의 회복, 특히 금전배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의 회복은 법원이 부과하는 배상명령의 형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회복적 사법경향은 조정모델을 형사절차에서 경미한 사건을 다이버전으로 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입법례를 가진 국가에게서 볼 수 있다. 특히 독일 형사사법에 서 잘 드러난다.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은 1999년 개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 제153조 a 와 제155조 a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형사절차와의 연계에 있어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과 법원의 재량에 의존하는 다이버전 방식을 채택하였다.

독일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재량적 다이버전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기소단계에서 검찰은 소추의 공익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고유의 논리에 의하여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게 되고, 둘째, 주로 보호관찰관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종사자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선자가 되고 검사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적 자원으로서의 회복적 사법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비형법적인 수단으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트렌첵은 독일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형사절차에 기행하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고 표현하고 있다.(Trenczek, 2003 : 272)

이러한 분석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호중(2009)은 다음과 같이 자유주의적 경향 속에서 입법화되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독일 형법 제46조 a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경우에 그것을 형사사법체계의 예방목적에 비추어 재량적으로 형감경 내지 형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특이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해자피해자조정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일차적인 형감경의 혜택대상이다. 또 하나는 행위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손해배상을 한 것만으로 형감경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부가적 노력(예를 들어 집을 판다거나, 은행 빚을 얻어 장기간 갚아야한다거나 등등)이 수반된 경우에만 형감경의

혜택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의 부가적 노력은 그가 조정절차에 차명한 것과 등가적인 가치를 지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그 가치는 형사사법체계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손해배상에 형벌의 공익적 필요성을 상쇄하거나 감소시키는 정도의 가치이다.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경향이 형사사법체계의 다이버전 모델과 결합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이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저 형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로 위치 지워진다는 점 때문이다.(이호중, 2009 : 14)

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앞서서 제3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 속에서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공동체의 실질적인 피해이상으로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러간다면,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조절은 누구의 몫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편도 아니고 피해자편도 아닌, 프로그램의 주선자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대화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권력적 개입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조정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나 주선자 또는 조정자가 (특정한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무리한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면, 그는 법관과 함께 객관적 정의의 수호자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이호중(2009)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길항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사법체계를 관통하는 원리는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적 원리의 정확한 준수가 사법체계의 결정을 정당화한다. 형사사법체계는 판사와 검사에게 일정정도의 재량을 부여하지만 그 재량의 정당성에 대한 통제 역시 재량의 법적 요건의 구비여부, 삼심제 등등의 규정을 통해서 법치주의적 틀 속에 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정의는 법치주의 원리를 최소화하면서 그 대신 정당성을 민주주의 특히 평등한 참여와 자율적 대화를 통한 결정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채우려한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사회에서 유행하는 대안적 갈등해결운동(ADR)과 요즘 우리 사회의 행정영역에서 나타나는 갈등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영역의 대안적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선택지가 주어졌거나 비교적 제한적이다.(이호중, 2009 : 15)³⁾ 그러나 회복적 사법에서는

3) 천정산 터널의 문제에서 참여적 결정주체들이 결정해야하는 것은 터널 공사의 적절성의 여부일 뿐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결정의 남용가능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이호중, 2009 : 15).

당사자의 대화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열려 있으며, 때로는 선택이 현재의 헌법적 가치체계에 기초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양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적 정당화의 경향 속에서 이 차이는 미묘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며 문제의 요체는 회복적 사법과 거기에서 산출되는 결정물들이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가 얼마만큼 법치주의 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하는 점이라고 한다.(이호중, 2009 : 15)

라. 회복적 사법에서의 공동체

범죄에 대한 건설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토대로 하는 것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명하지 않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의무의 상호성을 강하게 신뢰하는 개인적 상호의존성의 밀집된 네트워크’(Braithwaite, 1989 : 85)로서 공동체는 (특히 도시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웃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임무를 이웃에게 어떻게 밀어붙일 것인가?’(Christie, 1977 : 12) Christie 자신도 1977년에 이러한 회의적 질문에 대한 논거가 빈약했음을 인정하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러 개의 상호의존성의 네트워크에 관계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것들이다.⁴⁾ 근로자가 폭행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다수의 이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 가족은 감정적 문제와 금전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사용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파트너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며, 그 이웃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체’라는 일반적 개념이 어떻게 이들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공동체는 근대성의 세기말적 위기에 대한 해독제가 되었다’

(Crawford, 1997 : 148)

공동체에 대한 구체화가 힘들기도 하지만 누가 공동체를 대표하며 그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문제다. 대개의 경우 비도덕적인 사람을 공동체 대표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 공동체의 대표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설정해놓을 필요는 있다.

4) 예를 들면 가족, 학교, 직장, 또래집단, 스포츠 클럽, 정치단체, 인터넷 리스트 등

대개의 경우, 문란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들은 회복적 범죄 해결에서 공동체 대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 또는 그룹이 관련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기준과 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조정자는 대다수 피해자-가해자 조정에서 그런 것처럼 ‘치유 공동체’의 대표인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과 친척은 ‘재통합적 수치심유발’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시민위원회가 ‘배상적 제재’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갈등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가? 그러면 갈등의 어떤 성격이 회복적 절차에 관여할 공동체의 유형을 결정하는가? 이러한 회의론은 공동체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공동체주의는 프로그램이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다. 지지 공동체의 부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의 사후조치를 다루는 일반화된 체계적 대안 개발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그에 따른 형폐지주의는 그 사용의 정치적, 보수주의적, 도덕적 타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공동체의 개념을 신화적 믿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Crawford, 1997). 공동체는 단순히 형식적 사회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구성될 수 없다. 회복적 사법에서도, 한편으로 ‘살아있는 세계’ - 충분한 관계자원, 공유하는 정서, 약속, 결속 및 지원이 있는 ‘살아있는 사회 기관’ - 와 다른 한편으로 제도, 규칙 및 힘을 가지고 있는 정식 조직으로서 사회, 즉 시스템 사이의 건설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와 그 시스템은 리바이어던(Leviathan)일 뿐만 아니라, 권리와 법적으로 정의된 보장 또는 dominion (Braithwaite and Pettit, 1990)의 수호자이다.

입헌 민주주의에서 국가와 정부는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공식화된 제도화에 불과하다. Braithwaite와 Pettit(1990)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국가와 정부는 시민의 ‘dominion’, 즉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사회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전 범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람들의 ‘dominion’의 기초가 되고 성공적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한 틀을 형성하는 규칙을 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공동체와 정부는 범죄의 사후처리에 있어서 보충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의 질서로 정향된 정부는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한다. 공동체 평화와 사회 질서가 합쳐져서 안전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이것은 이론이다. 국가의 권력과 그 제도는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다. 사회경제, 도시화 및 형사정책을 통하여 국가는 공동체의 쇠퇴에 기여하고 있다. 형사정책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무시되어 왔고, 평화를 조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극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반면 정부는 공동체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공공질서의 유지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 국가를 범죄처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험한 경로’를 구성하는 지역적 사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하의상달식 접근방법을 장려하는 분권화된 지방자치

제는 지역적 사법이 아니라 사회적 사법의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제약요소에 구속될 필요가 있다'(Crawford, 1997 : 289). 공식적 국가와 공동체의 관계는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재고하고 재구성하여야 한다.

마. 회복적 사법에서 지역연대의 역할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가능하게 하는 재원이면서 동시에 범죄해결권이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던 범죄해결권을 공동체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넘겨받게 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피·가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지지를 위한 지역연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학교 등등 피해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대부분 지역연대에 속해있다. 그리고 지역연대에는 당연히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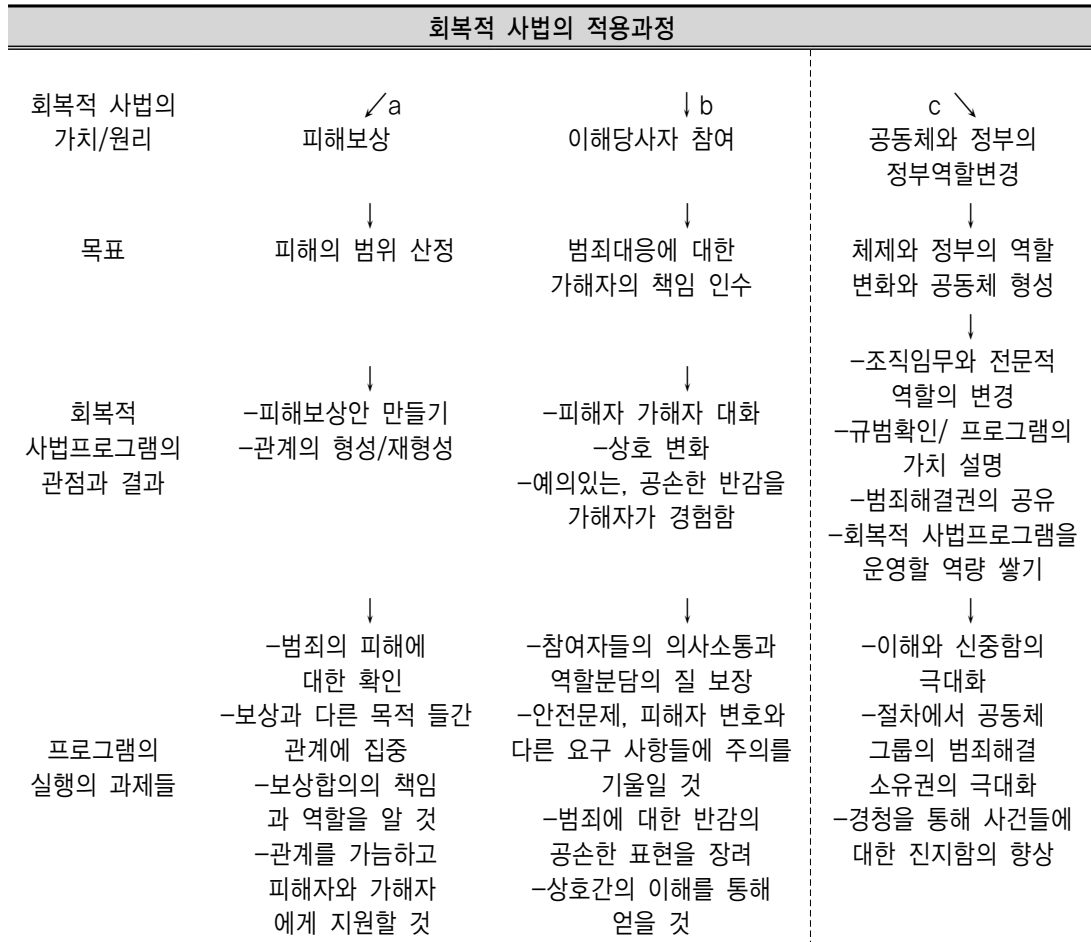
III. 성폭력사건과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선정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운영될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피·가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의 참여가 전제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회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원리)들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했는지, 피해보상 및 가해자의 책임인수를 위한 피해자가해자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등 목표와 그 목표에 의한 수단이 단계적으로 실현되었는지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다. 정책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c흐름이다. 성폭력 사건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정부 모두 기존의 역할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물론 형사사법에서도 아동·청소년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법무부, 2012) 범죄에 대한 대응을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가 주축이 되어서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과 지지를 실질적으로 도맡아하고 있는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도움 없이는 성폭력사건은 해결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범죄해결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기관이 주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구별해내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출처 : Bazemore & Schiff(2005), p.89의 표를 수정 보완함

【그림 1】 회복적 사법원리의 실현단계

이러한 평가방법이외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회복적인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의 정도를 달리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분석 할 수도 있다. 가장 회복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와 최소로 회복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이다.(Bazemore & Umbreit, 2001 : 16)

표 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

최소 회복적 모델	최대 회복적 모델
중점을 두는 것은 금전적 배상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범죄의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함.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을 허용함.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의 인간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기 전에 조정자와의 준비 만남이 없음.	피해자와 가해자는 따로 사전면담을 거침. 이때에는 범죄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듣는 것,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 조정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초점임
피해자에게 만남의 장소(피해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장소)나 참여에의 선택권이 없음. 사전설명 없이 조정기일 참석통지만 받음.	피해자는 프로그램 과정 전체에서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가짐 : 만나는 장소, 참가자들에 대한 성향 등.
조정자나 촉진자가 범죄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가해자가 발언함. 피해자는 단순히 질문을 하거나 조정자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함.	피해자에게는 첫발언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범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독려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조정자가 발언하고 양당사자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의 없는 조정과 화해(facilitation)의 고도의 직접적인 방식	조정자의 최소개입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본주의적이거나 변화지향적 조정모델이 사용됨.
침묵의 순간이나 감정의 표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	침묵과 감정표현에 관대하며 범죄의 영향전체에 대해서 논의함.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발성을 요구하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책임의 인수여부에 상관없이 출석이 요구됨.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
합의 도출을 위주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매우 짧게 진행됨.	대화를 위주로 진행하며 약 한 시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보통 필요함.
유급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 들이 조정자로서 임함.	훈련된 공동체 자원봉사자들이 조정자나 촉진자로서 기관직원과 함께 임함.

* 출처 : Bazemore & Umbreit, 2001 : 16

(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종류

회복적 사법 실무 프로그램은 북미와 유럽에서 많이 도입된 화해조정,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상위원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족집단협의, 캐나다 일부 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양형서클, 등을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피스메이킹, 치유서클, 등의 원주민의 특성에 따른 다른 이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그 형식이나 진행방법, 목적 등을 살펴보면 조정, 보상위원회, 가족집단협의, 양형서클의 4가지 정도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Bazemore & Umbreit, 2001 : 1-11). 4가지 모델 중 피·가해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은 가족집단협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족집단협의 프로그램의 유형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고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과 소년법상의 ‘화해권고’는 현재 조정프로그램의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는 소년사건의 케이스워크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실무진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내지 변형이 가능하도록 세부프로그램의 유형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표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4가지 모델의 비교분석

		형사화해·조정 (Victim-Offender Mediation)	보상위원회 (Reparative Boards)	가족집단협의 (Family Group Conferencing)	양형 서클 (Circle Sentencing)
행정 및 절차 (Administ ration and Process)	기원(Origin)	1970년대 중반 이후	1995년 이후(유사한 청소년패널(youth panels)는 1920년대 이후	뉴질랜드, 1989; 호주, 1991.	대략 1992년 이후
	현재 시행지 (Current Applications)	북미 및 유럽전역	Vermont주 등	호주; 뉴질랜드; 미국(1990년대이후) Montana, Minnesota, Pennsylvania 등	주로 캐나다의 Yukon 등지, Minnesota, Colorado, MA.
	회부시점 (Referral Point in system)	대부분 다이버전 및 보호관찰 조건, 경우에 따라 중범죄의 경우 수형중 이용	보호관찰 조건 중 하나 (youth panels: 대부분 다이버전)	뉴질랜드: 소년사법시스템. 호주와가와가모델: 경찰 다이버전 미국: 대부분 다이버전, 경우에 따라 학교 및 재판후사용	다양한 단계. 공식적 법원심리나 기소범죄의 교정절차에 대한 다이버전이나 대안으로 사용
	자격요건 및 대상집단	다양함. 주로 다이버전 사건과	비폭력적 범죄; 보호관찰	뉴질랜드: 모든 소년범(살인사건제	유죄임을 시인한 범죄자. 모든

	(Eligibility and target group)	재산범, 지역에 따라 중요 폭력범에 대하여(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	대상범죄자로 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한정	외) 호주 와가와가모델: 경찰 재량 또는 다이버전 기준에 따라 결정	종류의 범죄 및 범죄자 가능. 상습범 대상.
	담당자 (Staffing)	조정자(Mediator)	배상 코디네이터 (보호관찰관)	지역사범 코디네이터	지역사범 코디네이터
	장소 (Setting)	중립적 장소(도서관, 교회, 자치센터의 회의실) 등	공공건물 또는 자치센터(communit y center)	사회복지기관, 학교, 공공건물, 경찰시설	자치센터, 학교, 기타 공공건물, 교회
	절차 (Process and Protocols)	피해자가 먼저 진술한 후 조정자가 피해자-가해자간의 대화를 돕고 독려하나, 대본(script)에 연연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진술을 들은 후 위원회가 비공개 심의(private deliberation). 지역위원회에서 변형된 형태로 행해지기도 한다(youth panel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심의한다)	호주 와가와가모델: 코디네이터가 대본(script)에 따라 가해자가 먼저 진술하고 피해자 등이 진술하게 한다. 뉴질랜드: 대본은 없고, 가족구성원들의 협의 후 합의에 의한 결정이 허용된다.	법관 논평기회. 검찰과 변호사가(보다 중한 범죄의 경우) 사안의 법률적 사실을 제시한다. 모든 참가자는 '발언표(talking piece)'가 자신에게 넘어오면 발언기회를 갖는다. 합의에 의한 결정
	진행 (managing dialog)	조정자가 진행	위원장이 진행. 참가자는 질문받는 경우 진술	코디네이터가 진행	개회 후, 대화는 '발언표'의 전달 절차로 진행
지역사회 참가 및 기타 (Community Involvement and Other Dimensions)	참가자 (Who participate?) (지역사회)	조정자, 피해자, 가해자는 기본적인 참가자. 경우에 따라 부모 등 참가	보상 코디네이터 (Reparative coordinator)(보호관찰관), 지역사회보상위원, 가해자 및 지원자, 피해자(제한적 허용), Youth panels는 다이버전 직원.	코디네이터가 주요 참가자를 규명. 피해자 및 가해자의 친지, 경찰, 사회복지 기타 지원인(support persons)도 초대. 지역사회가 폭넓게 참가하지는 않는다.	법관, 검찰, 변호사가 중한 경우 참가. 피해자, 가해자, 지원단체 등 참석.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 공개.
	피해자 역할 (Victim role)	범죄에 관한 감정표현. 회복 계획의 내용과 가해자 의무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 절대적	위원들의 계획 마련에 의견제공(input). 드물지만 피해자의 포함도 현재 장려되고 있음;	범죄에 관한 감정을 표현하고, 보상계획(reparative plan)에 의견제공(input).	서클 및 의사결정에 참가; 가해자의 적격성(eligibility)에 의견제공하고, 지원단체 선정 및 치유회합(healing

		권리인 거부권, 동의는 절대불가결.	더욱 적극적 역할이 고려되고 있음.		conference)에도 참가 가능.
회부기관 (Gate-keepers)	법원 및 기타 기관(entities)에서 회부할 수 있다.	법관	뉴질랜드: 법원 및 지역사회법(communit y justice) 코디네이터. 호주 및 미국: 경찰과 학교 관료	지역사법위원회 (community justice committee)	
공식절차와 관계 (Relationship to formal system)	다이버전 및 처분(disposition)의 핵심 절차(core process)로부터 법원 업무부담에 최소 영향을 미치는 주변적 프로그램(marginal programs)과의 관련에 따라 다양	최소복역필요가 있는 저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 중의 하나. 확대될 예정. 업무부담에 대한 다소간 효과가 기대됨.	호주(와가와가) 및 미국: 경찰주도 절차, 업무부담에 대한 다양한 영향, 통제망확대에 대한 우려; 미국에서는 경미범죄(가장 흔하게는 상점절도(shoplign g))에 이용	법관, 경찰, 법원공무원(court officials)이 지역사회와 권한을 공유. 즉, 선정(selection), 제재(sanction), 후속조치(followup). 현재 법원 업무부담(caseloads)에는 최소 효과(minimal impact)	
준비 (Preparation)	전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대면(face-to-face) 준비작업. 경우에 따라 전화통화 접촉.	위원회 구성원에게 서비스전단계 훈련(preservice training) 제공 개별심리(individual hearng)에 대한 사전준비 없음.	모든 참가자에 대한 전화접촉으로 참가를 장려하고 절차를 설명함. 뉴질랜드 모델은 가해자, 가해자 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대면방문을 요함.	서클 개최전 가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광범위한 작업(extensive work). 서클 절차와 규칙을 설명.	
후속조치 (Followup) 집행 및 감시 (enforceme nt and monitoring)	다양함. 조정자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기타 프로그램 직원이 책임담당.	보호관찰의조건. 코디네이터가 감시(monitor)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신청(petition of revocation).	불명확. 호주(와가와가): 경찰, 뉴질랜드: 코디네이터. 미국 및 캐나다: 기타	지역사법위원회 (Community Justice committee). 법관은 범죄자의 계획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징역형을 유예(hold)할 수 있다.	
주요 목표 (Primaty outcome(s))	피해자가 범죄의 영향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relay),	의사결정절차에 시민이 관여하고 참가하여; 가해자에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 가해자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분쟁해결 및 범죄예방능력을	

	sought)	감정과 필요사항(needs)을 표현할 기회를 갖고, 피해자가 절차에 만족하며, 가해자가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감하고, 회복 계획에 합의하는 것.	대한 적절한 회복계획을 결정하고; 피해자 인식, 교육, 기타 장래 재범방지를 위한 방식에 대한 기타 활동을 요한다.	지원하는 한편,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며 가해자의 재통합을 촉진한다. “필요(need)가 아니라 행위(deed)”(즉, 가해자의 필요가 아니라, 범죄가 및 행해진 해악(harm)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경우 집단적 책임(collective accountability)이 강조되기도 한다.	증강시키고, 보상적 재활계획(reparative and rehabilitative plan)을 발전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의 안전문제를 고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그룹에 책임을 부과하고(assign responsibility) 자원(resource)을 확인한다(identify)
--	---------	--	---	--	---

* 출처 : Bazemore & Umbreit, 2001 : 1-11, 김지선(역), 2004(2) : 12-13

3)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적용사례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성폭력사건에 적용한 실험사례는 아직 없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이 성범죄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 호주에서 시행되었던 2가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이 심층조사는 진행과정과 범죄의 법적 절차에 관한 관계자들의 감정변화와 그 효과, 영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하에 요약 제시될 로지의 사례와 타냐의 사례의 자세한 기록은 K.Daly and S.Curtis-Fawley의 글에 나와있다고 한다.(박강우, 2007 : 55-70)

(1) 로지의 사례

로지는 매우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10대 소녀로 병영캠프에 참가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17세의 릭이라는 소년으로 같은 병영캠프에 참가했다. 훈련생은 은폐와 엄폐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용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로지는 낮에 발목을 다쳐 걷기 힘들었고 릭은 다른 훈련생을 먼저 보내고 로지와 남게 되었다. 릭은 로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로지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고 로지의 다리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국부주변을 움켜쥐었다. 로지에 따르면 이러한 릭의 행위는

4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한다. 릭은 로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로지는 계속 저항하면서 릭의 배를 팔꿈치로 가격한 후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였다. 릭은 로지의 벨트를 잡고 로지가 도망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였으나 로지는 도망하였다. 로지는 캠프로 귀환하여 바로 다른 생도에게 알렸고 약 3시간 후 여성경찰관이 캠프에 도착하여 로지를 인터뷰하였다.

릭은 부모 입회하에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다. 가슴과 등을 문지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부주변을 만진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는 성폭력(indecent assault) 혐의로 기소되었다.

처음 인터뷰한 여경은 전문가답게 로지를 위로하고 공포를 제거해주었으나 캠프 관계자들이 그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두었다는 점이 로지에게 사건처리의 부정적인 기억이었다. 사건이후 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해 항불안제 처방을 받았다.

입건이후 협의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1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법원에 보고하는데 4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지와 릭 모두 절차의 지연으로 고통을 받았다. 협의 프로그램 전에 릭은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서 상담가인 그웬을 몇 번 만났고 그웬도 협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협의프로그램 당일 버스를 5시간이나 타고 로지와 할머니는 남호주 에들레이드 시에 도착하였고 여비는 모두 자비를 부담했다. 협의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로지와 할머니가 비행기로 되돌아갈 때 공항까지의 택시비만을 지원하였다. 거리 때문에 로지의 상담가는 참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협의 참가자 구성의 불균형이 왔다. 릭, 릭의 부모, 릭의 상담가(그웬)과 로지, 로지의 할머니만 참석했다. 소년사법보좌관이 협의를 주재하였고 남자경찰관이 참석하였다. 사건 후 15개월이 지나, 릭은 18세, 로지는 13세였다.

릭의 상담가가 다른 모임으로 먼저 자리를 떠나야 되자 소년사법보좌관은 로지보다 그웬에게 우선발언권을 주었다. 피해자보다 그웬과 같은 전문가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다음으로 릭에게 사건에 관한 진술권이 부여되었다. 릭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when it happened)”와 같이 매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자 소년사법보좌관은 이런 모호한 표현을 제지하면서 “네가 성폭력을 했을 때(when you indecently assaulted)”와 같이 말하도록 정정하였다.

가해자와 그 지지자들이 사건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할 때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개입하고 있었다. 참여경찰관도 로지를 강력히 변호하였으며, 그는 릭에게 릭은 법을 위반했으며 협의에 회부된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로지는 빨간 모자를 쓰고 나온 릭에게 놀라서 나중에 빨간 모자만 봐도 불안해졌지만, “이 사건으로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릭에게 말했으며 이점이 회합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년사법보좌관은 말하였다. 릭은 직접적 사과가 아니라 “내가 이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였고 릿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릿, 로지를 보고 말해라”라고 깨우쳐 주었다. 로지는 “이봐 릿,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네 사과를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네가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라고 대답하는 등 로지는 매우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로지가 원했던 릿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양로원 봉사는 합의의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합의이후 로지는 더 이상 릿에 대해 화가 나거나 릿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합의가 불공평하고 힘의 불균형이 있는 등의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지만 로지는 이번 사건 처리방식에 만족했다. 즉, 법원에 가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타냐의 사례(가정내 성폭력)

타냐가 12살이었을 때 타냐의 엄마인 내시는 닉과 재혼했다. 닉에게는 앤디(11세)와 잭(16세)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잭은 타냐를 몇 번에 걸쳐서 성폭행하였으나 잭은 모두 타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신고이후 타냐는 조부모의 집으로 이사했고 잭은 친부와 계모의 갈등으로 부모집으로부터 쫓겨났다. 이후 친모의 집으로 옮겼는데 친모를 칼로 협박하여 쫓겨났다. 이후 주거가 부정하여 정신병원에도 잠깐 수용되었다. 타냐는 잭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하지 않았는데 타냐의 거친 행동이 학교선생님에게 인지되어 엄마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타냐의 할머니가 타냐를 학교에서 픽업한 후 왜 말썽을 피우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타냐가 사건을 털어놓았다. 타냐는 잭이 처벌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 합의회부에 분개했다. 타냐는 잭을 보거나 잭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거절했었다.

타냐는 나중에 여경의 설득으로 합의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타냐는 잭을 두려워한 점도 있었지만, 타냐의 편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친모와 계부는 참석하고 그녀의 편인 조부모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한 점이 불참을 주장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타냐는 자신을 지지할 사회복지가의 참석을 원했다. 친모와 계부는 타냐와 잭 모두 잘못했고 사과해야하며, 이 사건은 두 청소년의 억제되지 않는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친모와 계부는 타냐를 완전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고 조부모는 타냐의 완전한 피해자로 보고 지지하고 있었다.

사건발생 후 16개월이 지나 합의가 개최되었으며 소년사법보좌관, 여경, 잭, 계부, 친모, 타냐, 타냐의 사회복지가가 참석하였다. 합의 초반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 폭력적 언사가 돌출되었다. 소년사법전문가는 합의 장소를 더 큰방을 옮겨가며 사람들을 떨어뜨려 앉혀야 되었다. 타냐를 테이블 한 쪽 끝에 앉혀서 잭을 폭력과 소란으로부터 타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합의 도중에 잭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짝을 때리려고 하기도 했다.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냐에게 이 사건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타냐의 친모와 계부는 협약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시작 전의 태도와는 달리 짝의 여러 행동과 말들을 꾸짖고 타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타냐는 합의문이 짝에게 관대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가족문제나 짝의 난동을 정리하느라 회합시간이 3시간이나 걸려 배가 고플 틈이 힘들었다고 한다. 타냐가 주장한 짝의 사회봉사명령이 다른 참여당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짝의 정신건강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짝은 양극성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고, 협약 중 성관계를 가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짝은 “나는 머리로 생각하는 대신에 거시기(사타구니를 가리키며)를 생각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짝에 대해 관대해 보이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타냐는 협약에 참석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친모, 계부 등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시간낭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나쁘니 앓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협약 전후에 짝에 대한 타냐의 감정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며 타냐의 심리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협약이 별로 도움을 못주었다.

소년사법조작관은 재판보다 협약이 긍정적이 효과들이 많으며 피해자도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냐는 협약보다는 짝이 재판을 통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다.

(3) 시사점

로지와 타냐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따라서 정서적인 치유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협약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이나 가해자의 사과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냐는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친모와 계부와의 관계도 망가졌다.

타냐 사례의 경우 짝에 대한 관대한 합의문 때문에 타냐는 불만이 있고 피해자의 정서적 치유가 완전히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타냐에 대한 친모와 계부의 시각이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된 점, 타냐의 생각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짝이 재판을 통해 강력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었지만 타냐에게는 응보적 쾌감 외에 얻는 소득을 없었을 것이다. 정신이 불온전한 이들을 향한 계부의 눈먼 사랑으로 인해서 타냐의 성폭행 피해사실은 계속 부정되었을 것이고 친모조차 짝과 타냐의 불장난에서 기인한 사고라고 계속 생각했을 것이다. 정신적인 문제성이 보이는 짝이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아니라, 타냐가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이며,

보호받고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타냐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속해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타냐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타냐의 피해의 회복에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책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타냐에게는 의미가 있는 협의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 도입방안

1) 법적 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8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제가 해결되어야한다. 하나는 법적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무운영의 과제이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에서 법적 과제가 뜻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사법적 효과의 부여’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체계의 구축’이다. 논의의 핵심은 공동체의 참여유무인데 이것은 회복적 사법을 도입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소년사법체계와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와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절차로 이원화되어있는 우리 소년사법의 현실에서 대륙법계의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도입할지 영미법계의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도입할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순수론자들의 주장도 결국은 형사사법체계와의 조화를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성인의 형사사법체계와는 달리,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 교육지원을 소년사법체계는 전제로 하고 있다.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지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참여’가 전제되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도입은 소년사법체계에서는 성인형사사법체계에서의 도입과정보다는 순탄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에게 적합한 지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인 소년심판은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에 따른 보호처분의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에게 적합한 지원과 지지를 위한 핵심인 공동체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의 참여는 공동체를 피해자로 보고 공동체의 피해회복을 위한 장치이기 보다는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을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이점에서 일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핵심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범죄해결 권의 공동체로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사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공동체 참여를 전제로 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도입은 앞으로 개선해나 가야 할 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사과와 용서

가해청소년 면접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직후 사과와 용서를 하였고, 사법기관의 인지와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서 가해청소년은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가해청소년은 피해자의 엄마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어 하였으나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가해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의 의사와는 달리 성인 성폭행가해자와 동일하게 강력처벌 되지 않는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응보적 징벌을 원하고 있지만 소년사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징벌 보다는 요보호성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자의 욕구는 애초에 충족되기 어렵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을 가해소년이 지는 것을 통해서 보호자의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의 욕구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과와 용서 이 외에 가해자에게 다른 피해회복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 사회봉사, 수강, 금전적 피해보상, 등)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아저씨의 사과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의 사과는 회복적 사법에서 피해자 치유의 초석이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응보적 가해소년의 처벌도, 가해아저씨의 사과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현재의 형사합의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한 도구인 가해자 ‘사과’와 피해보상금이 전해진 다음의 서면상의 합의를 통한 피상적 ‘용서’가 존재할 뿐이다. 가해청소년 보호자의 의지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될 뿐이다. 관행적인 형사합의의 과정에서는 가해소년이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범죄해결의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에서는 ‘사과와 용서’도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협의 모델의 도입

회복적 사법의 형사사법 도입과정에서 순수론과 확장론의 논쟁은 결국, 기존의 형사사법제도가 영미법계인지 대륙법계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인의 형사사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회복적 사법의 원리원칙과 소년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회복적 사법의 원리원칙은 미세하고도 거대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에서 도입되어 실현, 실천되어야 할 회복적 사법의 원리에 공동체의 참여를 전제해야 하고 복지모델을 택하고 있는 우리의 소년사법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피·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회복 중심의 범죄대응과정에서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속한 공동체의 도움과 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정의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적합한 모델은 가족집단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범죄(회복적 사법)법에서와 같이 ‘협의’ 모델을 도입하고 실무는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호주의 법조문을 보면 협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족집단협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호주의 범죄(회복적 사법)법에서는 협의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회복적 사법협의의 준비자가 복합 형태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이든 회복적 사법가이드라인에 맞게 협의를 준비하면 된다. 협의의 종류는 가장 화해가 잘될 수 있는 것으로 준비자가 선택한다. 협의의 예를 들면 면대면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서신이나 이메일의 교환, 비디오 녹화물의 교환, 전화협의, 화상협의 등 다양하다.⁵⁾

하지만 우선, 기소전, 재판단계, 교정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성사는

5) Section 46 Form of conference The convenor of a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 may conduct the conference in any form (or combination of forms) consistent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guidelines that would, in the convenor's opinion, best facilitate—

(a)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b) the promotion of the objects of this Act in relation to the conference.

Examples of conference forms

1 face-to-face meeting

2 exchange of written or emailed statements between participants

3 exchange of prerecorded videos between participants

4 teleconferencing

5 videoconferencing

in Crimes(Restorative Justice) Act 2004,A2004-65, Republication No.13 ,Republication date:17 December 2009 p42

. Page URL: <http://www.legislation.act.gov.au/a/notification/2004.asp>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소중지, 양형에서의 참작, 가석방에서의 고려 등 다양한 단계에서 회부되는 만큼 다양한 법적 효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밀행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보호 사건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참여공동체 구성원의 비밀유지의 의무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서 피의사실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형사조정위원의 비밀유지는 잘 지켜져야 할 것이다.

2) 실무적 과제

(1) 성범죄 특성의 고려

실무 운영에 있어서 ‘성범죄’는 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범죄사건을 다루는 회복적 사법운영전문가는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 특히, 증거능력의 부족으로 형사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가해자의 자백을 형사사법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고소가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와 가해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할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가 중점이 되어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에도 형사합의를 통해서 감형의 효과를 노리는 가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 고소의 취하라는 사법적 효과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서 화해권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성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교정프로그램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가능하다. 영화 오늘(2011, 이정향 감독), 밀양(2007, 이창동 감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 송해성감독)에서 보듯이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서 심적 치유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정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고자 할 때에는 가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가해자도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면담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2) 학교폭력분쟁조정대상에서 성범죄 제외

학교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잠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하나로 정의하면서도 교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일반인은 성희롱과 형법상의 성범죄를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이 장난으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심각한 성폭력일 수도 있다.⁶⁾ 교사는 성폭력사건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대상도 아니다.

학생이 성폭력 관련 피해를 주장하면, 학교에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신고유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에 바로 연계하여야할 것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원스톱지원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등은 아동·청소년성폭력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피해학생과 1차적으로 논의하고 사법처리절차와 상담치료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한다.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서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가 어떤 유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신고과정에 대한 연수나 매뉴얼 인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능력이나 조사능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바지내리기, 브레이지어 끈 잡아당기기 등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성폭력은 학교에서 또래 조정을 통해서도 갈등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전문성을 요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분쟁조정 등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운영대상에 성폭력은 포함하지 않아야할 것이다. 다만, 피해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성적장난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6) 학생들의 성적인 장난에 관한 정도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구지역 부설 중학생 남녀 1,2,3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성적인 장난과 성폭력의 경계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장난이 섞인 답변이 많아서, 연구보고서에 자세한 결과를 실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분석은 가능했다. 강간과 성추행은 쉽게 구분하고 있었으나, 성추행과 장난은 쉽게 구분하지 못했다. 바지내리기, 속옷까지 벗기기, 성기 만지기, 음담패설을 하면서 수치심 느끼는 학생괴롭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난, 괴롭히기의 일환으로 성폭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동성간의 성추행에 해당하는 성폭력은 장난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3) 단계별 운영방안

(1) 현재 운영가능한 방안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은 운영가능하다. 증거능력이 불충분하여 고소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의 해결방안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의 심적 치유와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회부, 합의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처리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화해권고제도를 통해서 운영가능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경우에는 소년에게 적합한 장치로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운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또한 교정프로그램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면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가 개입하여 필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야할 것이다.

표 4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가능한 방안

사건처리 절차	가능한 운영방안	필수참여공동체
입건전단계 입건 단계 기소전 단계	○증거능력이 불충분하여 고소가 어려운 사건의 해결방안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회부, 합의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음.	대면프로그램의 진행시 모든 단계에서 해바라기아동센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가 개입하여 필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함.
재판단계	○소년법상 보호사건처리절차의 화해권고 적용가능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적용가능	
교정단계	○교정프로그램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가능.	
사법절차완료 단계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가능	

(2) 나아가야할 방향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검찰단계에서 기소 중의 법효과가 발행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소년사법과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면 운영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당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가해자 유형패널을 통해서 심적 치유가 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폭행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행의 피해가 어떤지 피해자는 진술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패널이 서로의 비밀을 엄수한다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심리적 치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표 5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건처리 절차	가능한 운영방안	참여공동체
입건전단계	○증거능력이 불충분하여 고소가 어려운 사건의 해결방안	대면프로그램의 진행시 모든 단계에서 해바라기 아동선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가 개입하여 필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함.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장애인에 대한 피해자진술조력인 제도의 명문화를 통한 역할 강화)
입건 단계 기소전 단계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회부, 합의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는 방법이 있음. ○검찰단계에서 참고요인으로 고려하여 기소중지의 법효과 발생가능	
재판단계	○형사사건, 보호사건 처리절차 모두 적용가능	
교정단계	○교정프로그램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가능.	
사법절차완료 단계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가능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대면프로그램 참여가능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패널의 운영. 당해 피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해자 유형으로서 집단적 대면프로그램의 운영	

4) 활용능력 제고방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현유무는 일선에서의 활용능력에 달려있다. 학회에서, 논문에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정책의 발표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실무의 일선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운영될 수 없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하고 회복적 사법은 법적 정체성도 가져야한다.

(1)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한 학습

회복적 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형사사법전공자들에게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에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종 형사사법기관 공무원 임용시험에 시험문제로 출제한다. 현재도 교정학과 형사정책학의 시험에서는 회복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시험출제가 되고 있지만 피상적이며 세부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사용되는 회복적 사법정의의 원리는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하나의 교과목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매뉴얼의 작성과 보급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갈등 해결방법으로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 보고 순서대로 따라하면 될 정도의 틀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형사사법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언어학적인 대화기법도 익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그랬어?’가 아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등 대화의 실례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적용할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은 심리학 통합연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실무일선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

당장의 기관 종사자들이 회복적 사법정의 민감성 재고를 위해서 연수가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교육되었다면 실무테크닉 등의 보충적인 연수만 필요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므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토 론 문

김 선 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토 론 문

김선혜(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 우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직접 참여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 대화의 과정을 통해 듣게 됨으로써 행위의 수치심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책임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이 문제해결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회복적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하기 위한 과제로 법적 과제와 실무적 과제를 꼽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동의한다. 법제화하고 실행되도록 하려면 이를 위한 인력양성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상호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소년사법체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보자면, 현재 소년사건의 화해권고는 회복적 관점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많지 않다. 가장 많은 수의 화해권고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 가정법원이 올 한해 화해권고기일로 지정한 사례가 50건을 약간 상회한다. (2012. 11월 기준) 3명의 화해권고위원이 한 조를 이뤄 조정을 하고, 한 사례당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 내외이다.¹⁾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당사자들이 상호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대방에게 얘기해서 시원’ 하다가나 ‘사과할 수 있게되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 -사과와 배상 등 가해행위에

1) 개인적 경험으로는 화해권고기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피해/가해 당사자들이 거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10시간 미만으로 끝난 경우가 없다.

대한 책임-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재판부에 보내고 나면 현재 화해권고기일과 관련한 민간위원들의 역할은 끝이 난다. 이 결과를 감안해서 재판부가 처분을 한다.

제도가 있다고 재판부가 모두 화해권고기일로 넘기는 것도 아니고, 모두 넘긴다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화해권고위원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화해권고위원이라고 모두 회복적 관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화해권고’라는 말에 대해 대부분 피해자는 ‘무조건’ 가해자를 용서하고 끝내는 말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 말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상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제안 내용가운데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소취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의견단계이긴 하지만 합의를 하는 것과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다르다. 합의 이행은 누가 추후 점검을 할 것인지-현재로선 법원이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확인한다-와 같은 부분적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성폭력은 또래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또래조정은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만 성폭력과 같은 사안을 다룰 수 없고 이런 경우는 성인 조정자가 다루도록 한다.

- 두 발표문 모두에서 공히 ‘공동체’를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강조했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행위주체로 언급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향을 ‘해석’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마도 강지명 박사님의 글에서 언급한 ‘살아있는 사회기관’이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공동체의 성폭력예방 역할 강화방안에서 예로 든 공중보건 모델은 지역사회를 네트워크하는데 적절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단체 간 협력과 지원이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지만 실현되지 않는 것은 힘을 합쳤을 때 더 많은 기회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 제안을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에서 종사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학교에서 다뤄야한다고 요청하는 주제는 아주 많다. 환경, 성폭력예방, 학교폭력, 인권, 다문화 등등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배움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바라고 요청하지만 학교는 현실적으로 현재 수업시수를 소화하기도 어렵다. 한편 지역공동체가 다뤄야한다고 하는 주제도 성폭력의 다양하다. 갈등해결센터도 공중보건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고 제안²⁾ 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나 지역공동체가 해야한다고 제안되는 일은 많은데 이를 실행할 단위와 주체는 과부하가 걸리거나 없다. 제안을 받은 주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한다고 본다.

2)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평화커뮤니티」 사업으로 평화교육, 또래조정자 훈련, 회복적 피해-가해 대화모임 등을 세 주체가 함께 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토 론 문

박 노 경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토 론 문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대책을 위한 현황조사와 개선방안

박노경(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 들어가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제도개선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방지 대책과 더불어 음란물 제작·유통방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24시간 빈틈없는 아동안전망구축, 성폭력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아동·여성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그 간의 성폭력 대책

- 아동성폭력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9개 부처 합동으로 「아동·여성 보호종합대책」을 수립('08.4)하고, 대책 이행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잇따른 강력 성폭력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보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09.10), 아동안전 보완대책('10.6),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11.10), 성폭력 근절 대책('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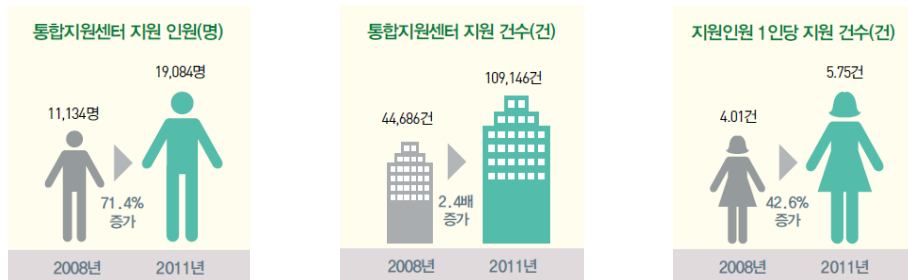
- 특히, 최근에는 형법과 성폭력 관련 5개 법안을 함께 개정하여,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친고죄 전면폐지, 신상공개제도 개선, 형량 강화, 피해자지원(진술조력인, 증인지

원관 도입),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 완비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 성폭력피해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용쉼터를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13년도 2개소를 신규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시설 3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13년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서비스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였다.

* 통합지원센터 개소 수 : ('08) 18개소 → ('12) 31개소



-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11.1)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서비스의 확대 내용은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절차 개선, 취학·주거 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성폭력 피해 아동취학 및 전입학 지원('11~), 의료비 확대 및 절차 간소화('12.10), 아동·청소년 피해자 법률조력인 신규시행('12.3), 진술전문가 배치('11.4~)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단위로 2010년 구성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2012년에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학교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대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운영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4. 보완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환경 조성은 미흡**하여 이에 대하여 사전적·예방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계발 교육을 활성화가 요구된다.
* 학교, 공공기관, 학부모 등 대상 성인권교육 체계화
-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나,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질적 개선 및 체계화는 미흡**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효과성 제고 필요하다.
- 특히 **성폭력 근절 공감대 형성과 양성평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여성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확산과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긴급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1366 상담·신고체계의 강화와 양성평등 인권의식교육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례관리팀, 운영협의회 등 실무자 중심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안전지도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지역으로 인식되는 학교 주변 환경의 적극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 현재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소년보호기관, 교과부 Wee center의 협조하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는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에게도 100시간이내의 필요적 수강명령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및 대상별 맞춤형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사회 내 전문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한다.



토 론 문

박 혜 영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총괄팀장)

토 론 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에 대한 토론

박혜영(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총괄팀장)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피해자 생활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동 피해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본 센터와 같은 센터들도 현재 종결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reopen하는 policy를 가지고 있다. 급성 및 만성 후유증들은 발달 과제 수행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인기로의 이행을 방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고비마다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 아동과 특히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후유증 외에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급한 증상의 치료와 심리상담은 윈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복귀한 후에는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wee센터 등 청소년지원기관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제적 빈곤 외,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 경우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드러내기가 매우 힘들다. 설사 외부로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얼른 수습해버림으로서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탄원서 압력을 받거나, 가해 아버지와 지속적인 동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매우 필요하다.

3) 피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모색

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쉽게 접촉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awareness 증진과 교육 매우 필요하다. 개인 정보에서도 성폭력 피해 관련 정보는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주고, 이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일반적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고, 그중 특히, 성폭력 피해 개인정보는 보호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4)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정착 노력

2012년 11월 22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과태료 등의 방법으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기관조차도 피해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고소를 거부할 경우 증거가 진술 뿐이 없는 상황일 때 검찰 송치나 법원까지 가서 다툼에서 이기기 어렵다. 따라서 친고죄 규정 폐지가 시행 되더라도 실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강화되어야 한다.

비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족의 응집력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더 크다. 친부나 계부 성폭력 사건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무기력한 엄마,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피해자인 딸에게 부재한 엄마, 또는 가해자의 의도적인 삼각관계화로 엄마가 딸을 질투하거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등으로 모녀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모녀관계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이는 별도의 개별적인 상담만을 가지고 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엄마가 아내구타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가정폭력과 성매매 문제의 중첩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자의 말같이 아동 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족의 다수에서 아내구타가

동반된다. 반복적인 아내구타로 인해 엄마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며 피해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캐나다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와 아내구타가 1/3에서 중복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피해 자녀들은 무기력한 엄마보다 가해자인 아버지와 불안정하나마 더 애착관계에 있기도 하다.

아동학대 중 아동 성학대 역시 마찬가지로 아동은 친부나 계부의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나 무기력한 엄마는 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 결국 아동은 청소년기에 가출하게 되고 가출하면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성매매로 생존을 이어가게 된다.

가족이 피해자의 치유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기꺼이 치료 세팅으로 올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센터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족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가족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치료는 매우 필요한 개입 방법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가족치료 훈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프로그램과 여가부 연구로 집단 가족치료 매뉴얼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족치료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고, 실제로 가족을 치료 세팅으로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부득이 피해자가 가족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시설에 좋은 인력을 갖춘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양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제 가족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살았던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미 남과 더불어 집단의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갈 능력에 많은 부분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시설에서 집단생활과 집단 규칙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가출을 일삼으며 결국 거리의 아이로 성매매나 절도, 범죄 연루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생존을 이어가는 모습은 드물지 않게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전용 시설이 되, 좋은 시설, 좋은 인력, 그리고 단호하게 적용되지 않는 규칙을 가진 청소년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방문 서비스 등 지원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

2013년도 사업 지침은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문 서비스는 분명히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우 빈곤지역 문제 청소년 가족에게는 재가 가족치료 서비스가 주어진다. 임상가들은 이런 재가 가족치료 경우 치료기관 방문 치료에 비해 4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말한다.

방문 서비스는 우리 사고의 확장을 요구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되나, 이에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피해자들이 방문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센터 내 인력 활용은 현재 적은 수의 직원으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 수가 적은 지방의 일부 지원 센터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침은 외부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나 예산 문제가 있고, 또한 외부에 피해 사실이 노출될 우려 때문에 방문상담을 꺼려할 수도 있다.

7) 남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성폭력피해자 지원 센터 지침이 2011년도에는 만 19세 미만 아동으로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1년도 피해자 및 가족캠프에 3명의 남자 아동과 청소년이 참석하였는데 여자 피해자와 보호자들 모두 “재네들은 왜 왔나요?” 하면서 쭈근거리는 모습 있었고, 남자 청소년 피해자들은 잘 어울리지 못하며 둘이서만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남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는 상담사와 의사, 경찰 모두 여성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에게 여성으로 구성된 staffing이 2차 피해를 예방하듯이 남자, 남자 청소년 피해자 역시 동성 staffing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자 피해자들이 피해를 외부로 노출하는 일이 점차 높아지면서 남자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의 필요성 또는 남자 staff의 보완이 필요하며, 남자 피해자가 원하는 성의 staff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 인프라 강화방안

1)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이 1인당 6만 천원에 머물러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를 자체부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느끼기에는 2012년 나주 사건 이전까지도 1인당 300만원, 그리고 센터나 관할지 구청의 심의를 통해 그 이상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보통의 피해자들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성폭력 후유증으로 볼 수 없는 문제들까지 전부 성폭력 후유증이라며 국비 치료를 요구한다던지와 같이

악용하는 예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체 의료비 예산 부족으로 병원 치료비 외상이 몇 개월씩 밀린 적도 있었음을 통해 볼 때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비의 올바른 운용, 즉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위기지원부터 지속치료가 가능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일명 통합센터)를 지향하며 기존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통합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위기 지원부터 지속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응급실 없는 어린이병원이라고 하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연령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은 trauma center로 가는 분위기이다. 이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trauma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예산, 물리적 환경, 인적 자원 등은 다양한 trauma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으로 결국 그 피해는 좀더 특별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주인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최근 경찰청의 학교폭력을 잡겠다는 캐치프레이즈 덕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위센터가 아닌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몰려들고 있다.

의료계와 비교한다면, 국내 어린이 치료가 전문인 어린이병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점차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병원을 없애고 모든 연령의 환자들이 모여드는 종합병원식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위기지원 기능이 보완된 통합센터 필요하다. 나주 성폭력 피해 아동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기존의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필요하다. 기관만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회복적 사법 정의 프로그램

1)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 성인가해자에 대한 대책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사건해결의 중심에 두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자 역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소를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망설이다 고소를 포기하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진심으로 사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해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청소년 피해자 가해자 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 가해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의 약 70%가 면식범이고, 성폭력 발생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기대한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 이념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피해자들 경우 선택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또 실제로 많은 미성년 가해자나 촉법소년이 고소해도 제대로 처벌 받고 치료로 연계 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3)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에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자-피해자의 화해나 조정 등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이 사건해결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토 론 문

원 혜 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문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에 대한 토론문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성폭력, 상해 혹은 살인이라는 잔혹한 범죄유형이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 강간, 강간상해/살인 등 아동을 대상을 하는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이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 범죄피해가 개인의 성장과정과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의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 시절 범죄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 학교생활 및 직업과 사회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¹⁾ 이와 같이 개인의 입장에서 아동에 대한 범죄피해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 사회공동체 및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²⁾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제도의 수립이 중요하단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이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은 예방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1)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70% 정도의 피해아동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는 등 피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광도,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년, 141면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발찌제도,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작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867,882건에서 2,168,185건으로 약 16%가 증가한 반면에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0,189건에서 16,156건으로 58.5%가 증가하였으며, 19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방지를 사전적 예방이 아닌 사후적 처우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 보고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1. 국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제재수단으로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이미 통계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지역연대를 통한 예방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모델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있다. 보고서의 중간 중간에 지역연대 활동의 어려움을 적시하고 있으나, 지역연대의 구성, 운영현황, 예산 등에 대한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음란물 등 유해환경 증가(30.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미흡(25.2%)', '왜곡된 성문화(19.5%)',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13.9%)', '성교육 미흡(4.6%)', '취약계층 증가(3.2%)', '지역 공동체의 해체(1.3%)'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성폭력범죄 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유해환경을 근절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유해환경 근절방안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3. 2010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는 친인척, 직장관계자, 동네사람, 학교·학원·유치원 관계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 84.4%이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는 11.5%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강간의 경우 친부, 의무, 모의 동거인 등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강간은 동일 피해자에게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보고서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지원 정책으로써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거지원과 더불어 상담, 치료,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해주는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재범방지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는 여전히 회복적 사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비하다.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화해권고’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사법의 각 단계별로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1.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피·가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지지를 위한 지역연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연대에 속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가 주축이 되어서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 기관들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추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연대를

통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해권고’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화해권고 절차에서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중재자들에 대한 파악과 대상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다면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확대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 론 문

조 아 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토 론 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에 대한 토론

조아미(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매매에 관해 많은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있어 왔다(이유진, 강지명,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성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이 연구는 2차년도로 계획되었다. 즉,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1차년도 목적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이 도출되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은 다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으로 나뉜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방안과 지역공동체의 성폭력예방 역할 강화방안으로 나뉜다. 이를 표로 작성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노력과 고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러나 토론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은 기존의 정책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와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보다 정책이나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이 된 것이라고 본다.

둘째,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공동체 회복방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과 관련해서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제안한 것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이나 성범죄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고 본다. 지역사회는 개인에게 1차적인 삶의 터전이므로 이곳에서의 성폭력 및 성범죄 예방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역할이 기대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피해자 생활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모색
		피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모색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정착 노력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강화
		방문 서비스 등 지원방안의 다양화
		피해의 중첩성에 대한 인식 및 재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남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아동·청소년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확대
		시설 및 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활성화 방안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읍면동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 실시 필요성 문제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남자아동 성폭력피해 지원 미비 문제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활성화 방안	

셋째,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피해의 회복을 범죄해결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는 가해자의 처벌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회복적 사법정의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둔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범죄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모든 성폭력 및 성범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물건을 훔친 경우라든가 학교폭력 등의 문제행동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및 성범죄에서도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서는 회복적 사법정의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정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및 성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워크숍자료집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

인 쇄 2012년 12월 17일

발 행 2012년 12월 1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